

제410회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11월24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1)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8)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6)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2)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7)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2)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6)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6)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1)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4)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3)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3)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2)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4)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9)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3)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5)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2)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6)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4)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5)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3)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0)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4)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4)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7)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6)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9)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3)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4)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5)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1)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8)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2)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4)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4)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9)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1)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9)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0)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4)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1)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3)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8)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2)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5)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1)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4)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6)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69)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28)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6)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2)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0)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3)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3)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9)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1)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1)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8)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9)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0)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3)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4)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5)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73)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8)
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5)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5)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55)
7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1)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44)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6)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4)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6)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2)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1)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3)
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2)
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9)
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0)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7)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4)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2)
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
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
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9)
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19)
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7)
9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5)
9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5)
9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0)
9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8)
9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9)
9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49)
9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4)
9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8)
10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4)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9)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2)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6)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8)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9)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9)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48)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6)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2)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9)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2)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7)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1)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5)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8)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5)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5)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0)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6)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7)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5)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2)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5)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4)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8)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9)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8)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4)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1)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7)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3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0)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4)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0)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7)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1)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3)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7)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0)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5)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1)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7)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5)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7)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6)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1)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8)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9)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8)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0)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1)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9)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1)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3)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3)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9)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5)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6)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1)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1)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9)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4)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3)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4)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8)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8)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9)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4)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9)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4)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1)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7)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0)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6)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6)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2)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3)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4)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4)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0)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3)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6)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1)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9)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7)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3)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4)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2)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4)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1)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0)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7)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3)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7)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6)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4)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2)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0)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2)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6)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8)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6)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8)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5)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2)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3)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8)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1)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2)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8)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0)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8)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0)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3)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4)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2)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4)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0)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1)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2)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1)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5)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6)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7)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1)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3)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5)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60)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9)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1)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3)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9)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7)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2)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1)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5)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0)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3)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1)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5)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6)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5)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2)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6)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3)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8)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0)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1)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8)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9)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4)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20)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2)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3)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5)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0)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3)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7)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1)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2)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8)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6)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6)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2)
28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8)
28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3)
28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4)
28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8)
2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2)
28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0)
29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5)
29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9)
2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9)
29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1)
29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49)
29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2)
29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1)
29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7)

29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0)
29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7)
30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8)
30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4)
30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9)
303. 조세법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6)
3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5)
3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9)
3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8)
3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6)
3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4)
3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2)
3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6)
3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1)
3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8)
3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8)
3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3)
3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4)
3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5)
3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02)
3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7)
3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1)
320.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1)
3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0)
3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7)
3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0)
3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22)
32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9)
3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8)
32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5)

상정된 안건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14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9) 14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14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14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2) 14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4) 1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6) 14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8) 14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9) 14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 14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9)	14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48)	14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6)	14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2)	14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9)	14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2)	14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7)	14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1)	14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5)	14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8)	14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5)	14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5)	14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0)	14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6)	14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7)	14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5)	14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2)	14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5)	14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4)	1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8)	15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9)	15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8)	1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4)	1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1)	15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7)	15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35)	1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0)	15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4)	15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0)	15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7)	15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1)	15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3)	15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3)	15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7)	1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0)	1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5)	15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0)	15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1)	15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7)	15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5)	15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7)	15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6)	15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1)	15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8)	15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9)	1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8)	15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0)	1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5)	1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2)	15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0)	15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5)	1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1)	15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9)	15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1)	15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3)	15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3)	15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9)	15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5)	15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6)	15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1)	15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9)	15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1)	15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9)	15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4)	16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3)	16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4)	1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8)	16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8)	16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9)	16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4)	16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9)	16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4)	16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0)	16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2)	16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1)	16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7)	16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0)	16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6)	16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2)	16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6)	16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2)	16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3)	16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4)	16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0)	16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4)	16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0)	16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3)	16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6)	16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1)	16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9)	16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7)	16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3)	16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4)	16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2)	16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4)	16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1)	1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0)	16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7)	16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3)	16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7)	16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6)	16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4)	16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2)	16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5)	16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0)	16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2)	1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6)	16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8)	16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6)	17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3)	17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8)	17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5)	17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2)	17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3)	17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8)	17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1)	17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2)	17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8)	17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0)	17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8)	17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0)	17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3)	17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4)	17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2)	17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4)	17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0)	17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1)	17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2)	17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1)	17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5)	17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6)	17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7)	17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1)	17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3)	17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5)	17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60)	17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9)	17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1)	17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3)	17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3)	17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9)	17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7)	17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2)	17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1)	17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5)	17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0)	17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3)	17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1)	17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5)	17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6)	17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5)	17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2)	17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6)	17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3)	18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8)	18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0)	18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1)	18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8)	18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9)	18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4)	18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20)	18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2)	18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3)	18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5)	18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0)	18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3)	18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7)	18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1)	18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2)	18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8)	18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6)	18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6)	18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2)	18
28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8)	40
28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3)	40
28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4)	40

28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8)	40
2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2)	40
28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0)	40
29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5)	40
29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9)	40
2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9)	40
29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1)	40
29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49)	40
29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2)	40
29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1)	55
29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7)	55
29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0)	55
29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7)	55
30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8)	55
30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4)	55
30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9)	62
30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6)	65

(10시25분 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설명하기 전에 오늘과 다음 주 우리 조세소위 일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특법 제4권을 마무리하고 또 5권은 일몰 연장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일몰 연장 관련되는 사항은 정리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순서대로 한다면 5권을 해야 되는데 이 5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안 위주로 되어 있으면서 각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안도 함께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년, 3년…… 2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3년, 5년 이런 식으로 일몰기간이 연장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상정은 하되 기본적인 사항들은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일 마지막에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6권도 새로운 국세기본법하고 국세징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인데 이 6권까지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7권하고, 8권은 아직까지 준

비가 안 났습니다만 8권까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5권 일몰 연장에 대한 건을 전체 심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전부 몇 권까지 있습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전부 8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월요일까지 마무리를 다 하도록 하고, 다만 그사이에 또 추가적으로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유동수 간사님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의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9일 날까지 의결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고 한테 그사이에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더 쟁점 사항이라든지 또 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2회독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간사 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회의 진행 관련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2회독을 시간이 없어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국회의 원칙상 사실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위에서 충분히 하나하나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이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고 우리가 관행상 해 왔었던 소소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도 없는 기구지만 사실상 교섭단체 양당 간사님의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법안의 내용이 합의되고 처리되어 왔었던 관행인데요.

특히나 ‘시간이 된다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희가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로 한 시간이 10시였는데 지금이 10시 반입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오시는 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렇게 시간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2회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저는 모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져 있는 물리적인 시간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독을 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적극적인, 긍정적인 조치라기보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유동수 간사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의 제약이라는 것은, 물론 회의를 시작하고 또 마치는 그 시간 제약도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시간 제약을 말씀드리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11월 30일까지 이 심사를 끝내서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손을…… 다른 외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회의 시작할 때, 첫 번째 회의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드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9)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2)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6)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8)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9)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9)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48)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6)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2)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9)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2)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7)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1)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5)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8)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5)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5)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0)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6)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7)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5)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2)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5)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4)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8)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9)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8)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4)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1)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7)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3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0)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4)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0)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7)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1)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3)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7)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0)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5)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1)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7)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5)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7)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6)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1)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8)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9)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8)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0)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1)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9)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1)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3)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3)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9)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5)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6)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1)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1)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9)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4)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3)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4)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8)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8)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9)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4)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9)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4)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1)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7)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0)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6)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6)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2)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3)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4)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4)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0)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3)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6)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1)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9)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7)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3)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4)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2)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4)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1)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0)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7)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3)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7)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6)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4)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2)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0)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2)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6)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8)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6)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8)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5)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2)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3)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8)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1)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2)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8)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0)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8)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0)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3)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4)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2)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4)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0)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1)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2)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1)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5)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6)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7)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1)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3)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5)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60)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9)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1)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3)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9)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7)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2)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1)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5)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0)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3)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1)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5)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6)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5)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2)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6)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3)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8)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0)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1)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8)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9)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4)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20)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2)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3)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5)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0)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3)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7)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1)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2)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8)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6)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6)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2)

(10시31분)

○소위원장 류성걸 의사일정 제101항부터 제283항까지 이상 18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난 소위 했던 그다음 순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소위 자료 4권 153쪽입니다.

17번 결혼지원금 등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한병도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개정안은 결혼·출산·양육 과정 전반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근로자에게 결혼·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결혼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가족 형성 전반에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법인이 결혼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저출산에 대응해서 기업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제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결혼지원금 등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 사실상 대기업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식으로서는 혜택을 못 받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정부로서는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8번 투자·상생협력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자 하는 한병도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2015년 시행 이후에 미환류소득을 산출할 때 공제항목에서 배당 및

토지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 임금증가분에 대한 가중치와 상생협력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해서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이 임금 지급과 동등하게 기업의 사내유보금의 환류 방식으로 권장되었지만 배당금 대부분이 일부 대주주와 해외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서 2017년에는 배당금의 환류 인정비율을 50%로 축소하였고 2018년부터는 환류 대상에서 배당금 전액을 제외한 바 있습니다. 작년 세법 개정에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정하고 25년 말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조세부담 현황을 보면, 21년에 신고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따른 법인세액은 1535개 법인이 총 1조 1857억 원을 부담해서 납부기업 수와 납부세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지만 2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적용 대상이 한정돼서 납부기업 수와 납부세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2쪽입니다.

기업소득이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고려하는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환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배당에는 외국인과 최대주주에게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금전배당만이 포함될 것입니다.

개정안 관련해서 첫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기업 사내유보금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키는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수단으로서, 배당금이 증대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액 개인투자자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배당을 통하여 기업의 유보소득을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64쪽, 특히 개인주주 및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배당만을 환류 대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대주주 및 해외투자자에 대한 배당은 환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 제고를 통해 외

국인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가경제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 다만 작년 2022년 세법 개정 당시 정부가 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제출하였지만 논의 과정에서 과세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축소하면서 제도를 존치하기로 한 바 있으므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할 경우에 동 제도를 통한 과세의 취지가 일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개정안에서는 내국인 중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게 지급된 배당액을 환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상속세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지만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 제도는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서 배당 부분은 여러 가지 부작용 또 비판 등을 감안해서 제외했고, 특히 지난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현재 정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을 다시 여기에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중소기업 결손금의 소급공제 특례를 확대하고자 하는 배준영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서는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 제도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과거로 소급하여 과거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소급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소급공제 방식의 경우 이미 납부한 법인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서는 직전 1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액을 한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1년 세법 개정에서는 21년까지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를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 적용기간을 조특법에서 확대한 바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환급실적을 보면, 법인의 경우 2018년 이후 환급세액과 환급받은 법인 수가 증가하여 2022년 1만 906개 법인이 3303억 원을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23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첫째,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결손금이 클 수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둘째, 결손금 공제제도는 기간과세 원칙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며 10년간 허용되는 이월공제와 달리 소급공제기간을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은 일반적인 세액공제·감면제도와 달리 이월공제제도에 따라 미래에 공제받을 금액을 미리 환급받는 것일 뿐이므로 중소기업에게 일정한 기간 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해서 과도한 혜택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음 쪽, 다만 결손금 소급공제는 이월공제 방식과 달리 과거에 이미 확정·징수된 세액을 환급하는 제도이므로 소급공제기간을 확대할 경우에 이미 확정된 국가 세입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소급공제기간을 확대할 경우 세수 변동폭이 확대되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셋째, 개정안은 지나친 특례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만 이에 따르더라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결손금 환급 특례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93만 777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94.7%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결손금 소급공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미 낸 세금에 대해서 거꾸로 결손을 공제해 주는 제도기 때문에, 그리고 예외적으로 2년 동안 인정했던 것은 코로나 때 20년의 경우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21년에 결손을 공제하려고 그래도 20년에 이익이 없어서 아예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말 한시적으로 2년을 늘려 줬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코로나 때처럼 어려운 상황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20번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양경숙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21년과 22년 동안 방역지원금은 1차 352만 4000개사 대상으로 3.5조 원, 2차는 364만 9000개사를 대상으로 10.7조 원이 지원되었고, 같은 기간 손실보상금은 21년에 총 60만 3000개사를 대상으로 1.8조 원, 2022년에는 2370만 개사를 대상으로 6.3조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 개인이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왔지만 법인이 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개인 소상공인과는 과세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세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에 포괄적으로 과세되는 체계를 지니고 있어서 정책적 목표를 위해 지급된 금원의 성격을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을 익금불산입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보상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지원 목적의 손실 보상금 등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발생했을 소득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므로 영업활동이 제한됨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공적보상으로 회복했다면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면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21년과 22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지급된 손실보상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제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전문위원 마지막 부분처럼 과세라는 것이 담세력에 맞게 과세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지원금도 일단 수익에는 간주가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보상금, 영업보상금이나 토지수용보상금도 그런 차원에서 과세 대상으로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들으셨지만 현행법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된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익금에 산입되는 수익으로 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수용했으면 합니다.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를 수익으로 잡아서 산입시켜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인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소상공인 차원을 넘어서 그것은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많고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그것의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소상공인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통계를 통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를 돕기 위해서 지원한 지원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 모순이기도 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법안을 제출했으니까 기재부가 수용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호 위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요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 해서 손실을 입은 경우에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지요. 그런데 고용과 임대료 등을 정상적으로 유지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대출해 준 것을 90%까지 탕감을 시켜 줘요. 나는 이게 정의롭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대출하고 네가 책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경우에도 이 손실보상금의 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명령에 의해서 영업을 못 한 경우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부가 영업을 못 하게 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 주는 것이거든요. 그 지원금에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못 하게 한 것에 대한 손실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보기에 는 그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정책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양경숙 위원 진작에 조치가 됐어야 돼요.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정태호 위원님하고 양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어려운 소상공인들 폐업시키고 하는 부분들의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들이고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세하지 않는 다라고 해석해서 지금 비과세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유일하게 영리법인의

경우인데, 물론 영리법인들도 조그마한 영리법인도 있고 큰 음식점 사업자 영리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현행 세법의 체계는 보상금을 줬다 그래서, 법인세율이 10%·20%니까 보상금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20%를 떼어 가는 게 아니지요. 당연히 그 법인들이 영업정지를 당했으니까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적자 본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적자를 보전해 줬다면 여전히 결손금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 주는 수준이지 결손금을 넘어서 엄청난 흑자를 보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업정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안 나고 그래도 이익을 좀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얹혀서 이게 과세소득으로 포함이 될 텐데, 어쨌든 그 이익이 줄어든 부분 또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줄어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가 현금으로 보상을 해 줬다 그러면 전체적인 법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복식장부를 통해서 수익과 비용이 계속 대응되기 때문에 그것을 과세하는 게 큰 원칙에서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좀 심한 표현이긴 한데 만약에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비과세를 해야 된다면 그러면 그 당시의 영업 제한을 통해서 발생한 비용은 손금을 부인해야 되는 그게 또 과세 형평에는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세법에서는 영업 제한이든 금지든간에 모든 발생한 비용은 다 비용으로 발생하고 결손금으로 다 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장부를 쓰지 않기도 하고 추계과세를 하기도 하고 개인소득과 가계소득의 구분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해석으로 비과세를 결정한 건데,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해 줄…… 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원칙상으로, 어쨌든 과세 형평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익을 본 사람과 크게 손실을 본 사람, 보상금을 많이 받은 분과 적게 받은 분 또 다른 소득이 있는 것 따지면 과세를 하는 게 체계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호 위원 감염병에 의한 영업정지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

면 정책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과세 문제도 그런 세법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거지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장사를 못 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정책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과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특단이든 아니든 간에. 그게 나는 논리적으로 더 맞다고 보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태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데 아마 현실에서는 작용을 하면서 또 손실보상금을 산출하는 근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들 또 영업정지로 인해서 팔지 못했던 수입들 그것을 사실은 100%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100% 보상을 한다면 세금도 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영업보상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가져가게 되면 어쨌든 기존에 장사 못 한 것에 대한 법인세가 빠지는 부분은 당연히 있으니까 전체 손실 본 것의, 세금을 안 내니까 80%만 보전을 해 주겠다 이런 논의도 가능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80%는 아니고 100% 다 드리고 그것에 따른 법인세 부분이 세이브 되는 부분은 고통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꼭 정답이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의 영역이 많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런데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세금 매기는 그런 사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개인이기 때문에 다 봐 줬다, 개인도 돈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손해 많이 본 사람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세제실장의 그 논리라고 하면 일일이 다 조사해 가지고 돈 조금이라도 번 사람들은 세금 매겨야지요. 왜 그런 자기모순과 논리적인 괴리에 빠지려고 그래요?

그런 식이면 법인도 마찬가지로지요. 그런데 왜 개인 자영업자들은 다 세금을 면제하고 법인 내에서는 돈 번 사람도 있으니까……

누가 보상금이나 지원금에다가 세금 매겨요. 그 자체가 이상한 사고방식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기본적으로 보상금하고 배상금에 대해서는 다 물립니다. 토지보상금도 물리고 영업보상금도 물리고, 어쨌든 법인의 경우에는 그냥 순수익이 증가하면 물리는 것이고 그 보상금도 영업에 대한 것이든 수용에 대한 것이든 당연히 순수익이…… 그 법인에 대한 과세입니다, 주주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양경숙 위원**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근본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괄주의로 할 건지 열거주의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되는 보상금 등 전부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외국의 예에 관련된 사항하고 또 개인소득세하고 법인소득세에 관련된 차이 이런 것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랑 자료 요청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여당 위원님들은 오시자마자, 지금 30분 정도 계셨나요? 아무도 안 계셔 가지고, 저희가 아무리……

○**소위원장 류성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연락을 드렸고요. 또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사항도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같은 시간에 다른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실에서도 다시 한번 연락을 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너무 형식적인 측면으로 자꾸 보이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당에서는 한 분이라도 꼭 계실 수 있도록……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소위원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하게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혜영 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인데요.

저희가 5차까지, 지난번에 회의를 하면서 안건들에 대해서 정부 측에다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받지 못했거든요.

○**소위원장 류성걸** 관련되는 자료는 그때그때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소위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한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께도 전체 다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준비를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리고 행정실에서는 자료요구했던 리스트를 전부 다 정리하십시오. 정리해서 어느 게 들어왔는지를 그때그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21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4건의 의원 발의안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서 사업자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직접적인 조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세액감면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는 거제시 1개가 지정돼 있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현재까지 지정된 곳이 없고 고용재난지역은 아직까지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180쪽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안은 위기지역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소득·법인세 감면 기간과 폭을 10년간 100%, 2년간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병도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각종 과세특례 대상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기업에서 수도권 안 기업으로 변경하여 수도권 내 이전 기업에 대한 특례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김정재 의원님과 전재수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현재 25년 말인데 이를 4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먼저 위기지역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추가하고자 하는 김상훈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서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기지역과 같이 상향된 조세감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다만 현행 지방이전 세액감면제도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의 낙후수준별로 감면 혜택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특화 지역특구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우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지역특구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겠습니다.

다음 나 번, 수도권 내의 이전 기업에 대한 특별 적용을 제외하고자 하는 한병도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이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보면 수도권 과밀 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수도권 내부의 이동을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하여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 밖은 낙후지역,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투자 촉진이 필요한 지역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이전 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경우에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겠습니다.

184쪽 둘째, 현행법에서도 대상을 한정하거나 차등적인 감면 기간을 설정하여 수도권 밖으로의 공장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중소기업 공장에 한해 적용되고 있고, 수도권 밖으로의 이동 대비 축소된 감면 기간을 규정해서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기한의 연장과 관련해서는,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25년 말까지 연장하였으므로

향후에 일몰 연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먼저 위기지역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추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도 어려운 중소기업이 모여 있는 지역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있습니다만 위기지역이라고 정하고 있는 지금의 대상과 병렬적으로 놓을 정도로 같은 수준이나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 적용 대상의 조정,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하자 하는 취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제도도 사실 수도권 밖으로 나가는 데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감면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낙후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현재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서 내년 말까지 지금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일몰이 돌아올 때 한 번 더 심의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도 굉장히 복잡하고 한데 이것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22년 국가전략기술사업 관련 외국법인 주식 등 취득·인수 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윤영석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동 제도는 소재·부품·장비 및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외국법인의 지분비율 50% 이상 취득할 경우 인수가액의 5%를 세액공제 하는 것으로서,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고 작년 세법 개정에서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 등 취득·인수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전략기술 육성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둘째 외국법인과 국가전략기술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 등을 취득·인수하는 경우에는 지분비율 5% 이상 취득으로 공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쪽, 먼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가전략기술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면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살펴보신 바와 같이 조특법에서는 7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였고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에서는 12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89쪽, 외국법인과 국가전략기술사업 공동 추진 시 지분을 취득 요건을 50%에서 5%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전략품목에 대한 공급망 확보, 기술 패권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동 특례는 외국법인 M&A를 통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핵심품목·사업에 대한 기술 확보 및 국산화에 있으므로 외국법인과 사업 공동추진까지 동 특례를 확대할 경우에 기술 확보 및 국산화라는 당초 제도의 취지를 저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세제 지원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문제는 지난번 회의 때 많이 다루어졌고 일부 위원님께서서는 이제는 좀 평가가 필요할 때 아닌가라는 말씀도 주셨고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더 확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 지분 인수와 관련해서 5% 이상, 지금은 지분을 50% 이상 취득하거나 경영권 확보 시 지분 비율 30% 이상 취득을 할 경우에 세제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5%는 일종의 약간 포트폴리오 투자적 성격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국가전략기술을 외국에서 확보했다고 인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요.

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90쪽,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신탁에 지원 시 당기순이익을 제외하고자 하는 강준현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현행법은 농협, 수협, 신탁, 새마을금고 등 특정 조합법인에 대해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접대비 등만을 조정한 금액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당기순이익 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납세를 위해서 복잡한 세무조정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법인세법상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과표 20억 이하는 9%, 초과분은 12%입니다—을 적용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개정안은 신탁법상 조합법인이 중앙회로부터 받은 경영정상화 목적의 지원자금을 과세표준 산정 시 수익에서 제외하고, 신탁중앙회가 단위조합인 신탁에게 배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손금 산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탁이 받은 경영 정상화 목적의 지원자금을 수익에서 제외하는 부분입니다. 신탁은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부실조합이 비교적 많은 수준이며, 이들 상당수가 장기간 부실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신탁중앙회가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신탁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신탁에 동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해서 충실한 경영정상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4쪽입니다.

신탁중앙회에서는 18년 이후에 부실조합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연평균 3.2개 조합에 연평균 44억 7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 중이고, 이 중 연평균 4억 2000만 원이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정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기금은 통상 손실 금액의 일부만을 지원하므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자금지원 후에도 해당 조합은 누적손실이 있는 상태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자구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부담이 가중될 경우에 충실한 지원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예금자보호기금 제도의 취지에

맞춰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하고 부실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현재 저율의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구조조정 관련 법인세 특례가 적용된 적이 있으므로 별도의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신탁중앙회로부터 경영정상화를 위해 받은 자금일 것을 특례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방식이나 범위 등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특례의 타당성·효과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위해서 일몰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 번, 신탁중앙회의 배당에 대한 손금 산입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신탁은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으로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할 수가 없어서 중앙회가 배당재원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당받는 신탁에도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탁중앙회에서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로 인해서 최근 4년간 147억 6200만 원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농협과 수협은 중앙회가 배당하는 금액 등을 중앙회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신탁에 대해서도 같은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배당은 손익거래가 아닌 잉여금의 처분으로 손금의 대상이 아니고 배당을 손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중앙회의 수익사업은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농협과 수협의 경우에는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개편 이전보다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례를 도입한 것으로서 신탁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먼저 신탁조합이

구조조정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받은 것에 대한 익금불산입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면 신탁중앙회나 신탁이나 예보기금에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먼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부가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소득이나 이런 걸 비과세함으로써 그 구조조정을 위해서 자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 가는 단계에서까지 과세 대상에서 빼자 하는 부분은 결국 그냥 세금에서 다 떼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탁중앙회의 배당에 대한 손금 산입 인정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농협, 수협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특례를 뒀던 부분인데 이걸 일반적인 신탁에까지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준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강준현 위원 첫 번째는 이게 부실조합한테 가는 거잖아요. 부실조합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혜택을 주자는 건데 부담을 좀 덜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자금 지원 방식이나 범위 등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에서 지원 방법을 구체화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전문위원 김경호 저희가 말씀드린 게 과거에 13년에서 15년까지, 그때 신탁하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중앙회가 각 부실조합 간 계약 이전을 통해서 할 때 중앙회가 조합에 자금을 대출해 주고 그 대출한 자금을 다시 조합들이 중앙회에 예치한 다음에 그 이자를 받아서 구조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례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할지 어떨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준현 위원 신탁이나 마을금고나 단위농협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과 굉장히 밀착돼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5대 주요 은행들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마을금고나 신탁이나 단위농협이나 많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부실조합까지 법인세를 부담하는 건 좀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배당금 문제인데 저는 보니까 이게 이중과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신탁중앙회가 법인세 연 37억, 얼마 되지 않네요. 이게 자꾸 세금 부담이 주어지면, 어차피 1차·2차 이중과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배당을 확대하면 조합들이 배당을 또 추가적으로 시민들한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우리 기재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몇 가지 현재 세법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실 신탁의 정상화 또 이중과세로 인한 부담, 충분히 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일단은 신탁만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모든 어려운 금고, 단위조합까지 다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한 더 큰 고민을 사실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부실 신탁 또는 금고가 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아까 또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아마 그 기업은 굉장히 결손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냈던 중앙회에 자기가 납부한 모든 회비나 기여금, 보호기금에 대해서는 다 손비를 인정을 받았고 최근에 부실이 쌓여 있다면 조합중앙회로부터 받았을 때 과연 얼마나 법인세가 발생하는지 그 실태가 좀 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탁중앙회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부분은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중과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중과세가 되는 부분은 농협과 단위조합의 경우에도 이중과세라고 생각하신다면 똑같이 이중과세를 하고 있고요.

모든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 있어서는 일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라는 것은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50% 이상 자회사는 전액을 해 주고 지분율에 따라서 달리해 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합법인 과세특례가 굉장히 큰 특혜다 보니까 배당금 자체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과세라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고 있지만 지금의 특례는 부족하다, 더 세금을 깎아다오라는 어떤 문제 제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협과의 차등 문제에 있어서,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중앙회와 단위신탁 딱 이 두 관계에서만 관계가 되는데 농협의 경우에는 단위농협이 있고 그 위에 농협은행이 있고 그 위에 농협중앙회가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서 농협중앙회로 올릴 때 한 번 저희들이 빼 주고 있습니다, 그걸 돈이 넘어갈 때마다 과세를 하게 되면 3중 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신용하고 농협 구조개편을 하면서 금융을 따로 떼다 보니까 3중 과세를 막기 위해서 다른 새마을금고나 신탁하고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이중과세 부분을 이중과세라고 본다면 그런 과세 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 한 단계에서만 빼 준 거지 기본적으로는 농협금융에서 법인세를 한 번 내고 그 돈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다시 단위조합이 받으면 그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는, 그래서 농협하고 신탁의 경우에 과세상의 차등은 없다, 단지 삼중 구조냐 이중 구조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균형을 맞춰 주는 차원이니까 근본적인 조합법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냐 그런 측면의 고민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준현 위원 지금 이 시기에는 시민 밀착형, 서민 밀착형 이런 금융 관련해서는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농·수협 말씀하시고 하면 끝도 없는 거고, 우리 차관님 좀 깊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호 위원 신탁은 주무 부처가 어디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금융위입니다.

○정태호 위원 금융위가 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기는 하지만 신탁, 새마을금고는 그야말로 서민금융기관이잖아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주무 부처기는 한데.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대개 신탁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돈을 넣고 대출을 받아 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부실한 부분이 신탁과

마을금고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신탁 얘기를 들어 보면 부실 단위신탁에 대한 지원을 내려 주는데 결국 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매겨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원금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부실 단위신탁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도 길어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게 지금 악순환에 빠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고금리 시대의 금융기관하고 똑같이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역시 어떻게 보면,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인 금융기관으로 본다면 역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너무 그것을 과세 이론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부실화된 단위신탁들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적으로도 더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문제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농협하고 비교를 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것을 좀 더 구조조정 아니면 단위조합을 정상화시키는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걸 제안하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방안을 빨리 찾아야지 계속 이 상태가 노정된다면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제 짧은 소견으로는 지금 부실한 신탁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잡는 부분, 아까 또 손실보상금을 수익으로 잡는 부분, 법인에 대한 그게 사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같은 맥락에 있는데 세법상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저는 이 부실 신탁과 관련해서는, 진짜 실제 구조조정하고 있는 데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받는 금액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실제 세금은 손익에 대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부실한 신탁의 상황으로 봐서는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어느 정도 더 부담하게 되는 건지 또 이것을 비과세를 한다거나 익금으로 안 잡아 버리면 체계상으로는 또 지금 현

재 손금불산입되어 있는 부분을 또 정리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구조조정하고 있는 신탁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예,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도 형평성이라든지 또 이중과세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98쪽,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4건의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감소시키는 대신 시간당 임금을 상승시키고 상시근로자 고용을 유지·확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간 임금감소액의 50%를 소득공제 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등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이래 여섯 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200쪽입니다.

활용실적을 보면 19년도까지는 조세지출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19년도부터 기업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대상에 위기지역 중견기업을 추가함으로써 20년 약 7억 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한 뒤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류성걸 의원님과 정부안은 3년 연장하는 것이고, 서영교 의원님 안은 4년 연장되고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고용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특례의 적용기한이 연장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201쪽 마지막,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 특례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공제금액 한도가 적용되는 감면실적이 부재해서 현행 공제

금액 한도가 부족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 지원의 연장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저희들이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득공제 금액 한도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1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평균으로 본다는 게, 사실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만 평균이 현재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제받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 한도를 지금 다 받으려고 그러면 1년간 자기 임금총액이 2000만 원이, 50%를 지금 받으니까 다른 요인이 없다면 한 2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지원 혜택은 줄 수 있는 수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에 동의하시면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정부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25번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하고자 하는 4건의 의원안과 정부안입니다.

203쪽입니다.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금융중심지에서 금융·보험업 등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로 고지한 지역은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동 2개 지역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부산 문현동이 동 특례가 적용되는 유일한 지역에 해당되고, 2017년 1개 기업이 100만 원의 법인세 감면을 받은 이후 조세지출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204쪽입니다.

또한 해당 특례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여의도가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분야 스타트업 유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서 서울시

가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허브 도시 간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안은 일몰을 2년 연장하는 것이고, 금융중심지 확대 부분 관련해서 유경준 의원님과 성일종 의원님 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 배제요건을 삭제하고, 김민석 의원님 안은 금융중심지를 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으로 규정함으로써 동일하게 특례 대상에 여의도를 금융중심지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된 지구로서 기업의 집적 및 투자 확대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5쪽, 다만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을 특구로 유인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적용 대상을 여의도 금융중심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의도는 조특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금융기관을 모아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국제금융중심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각종 특구 지원제도는 수도권에 비해 인구, 제반인프라 등이 부족한 비수도권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조특법상 지역특구 지원세제 중에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여의도는 인재확보 용이성, 인프라 수준 등 금융경쟁력이 비수도권 대비 높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먼저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정부안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정부는 이게 어떤 특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현재 새만금 특구에 대한 일몰이 25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관련해서 일몰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소위 특구 형태에 대한 세제지원을 25년 말로 맞춰 놓고 리뷰를 같이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25년 말로 저희들이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례 대상을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하고 하는 부분은, 금융중심지라는 것의 취지로 보면 굳이 지역을 이렇게 수도권이나 아니냐를 나눌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또 금융중심지라는 이유로 수도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를 짚어 봐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이걸 연장을 하려면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8년 동안 사실상 실적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는지, 연장을 하면 달라지는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실적이 굉장히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단순히 사업장을, 지금 주로 금융 공공기관들이 사실 부산으로 많이 내려갔었고 일단 서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사업장을 옮겨 간 그런 금융 공공기관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다음에 또 너무 조그맣게 창업하시는 금융기관들은 투자 요건 이런 걸 못 맞춰서 못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투자를 맞출 수 있는 일부 금융대기업들이 거기에 지점을 개설하거나 그럴 수 있기는 한데 그러려면 이게 사업장 단위도 과세를 하다 보니까 사업장들이 또 구분경리를 해야 되고 이 사업장에서 정말 비용이 얼마고 소득이 얼마고 거기에 따라서 그걸 또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 자기의 포션에 비하면 미약하다 보니까 굳이 안 받겠다, 그 해당 창업한 사업장이 좀 더 커지면 그때 가서 받겠다라는 취지에서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적이 조금 미미했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현시점에서 폐지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 금융중심지가 지금 25년까지 3단계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업이 확장되면 여러 가지 기업들 입주도 많아지고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 보니까 별로 효과도 없는데 나머지 3단계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호 위원 아시아 금융허브를 우리가 외친 지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대한민국 금융은 예대마진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금융산업을,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그런 비전이 뭔지는, 정부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정책 틀 속에서 이 부분이 뭔가 의미 있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금융협회 쪽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인데 미래 대한민국 금융의 비전을 놓고 볼 때 홍콩의 미래가 그렇게 옛날 같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여의도라는 공간이, 결국 이 정책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금융 스타트업에 많이 유치하고 또 육성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지금은 부산 문현동만 되어 있는데 여의도도 우리가 한번 홍콩의 미래 전망과 또 우리의 아시아 금융허브라는 비전과 이런 것들을 놓고 여의도를 판단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지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뭐든 이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중의 하나의 정책 틀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차관님 혹시 거기 가 보셨어요, 부산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가 봤습니다.

○유동수 위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임대업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었고요.

○**유동수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군데 1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금융지 중심을 부산으로 정했으면 어떤 한 산업을 특화해서, 예를 들면 선박금융이면 선박금융만 하든지, 아니면 선물거래소도 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특화하고 거기에 맞는 세제도 좀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제가 앞서가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게 공론화를 좀 기업에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놔둘 수가 없거든요. 금융지를 정해 놓고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 놓고 부동산임대업 비슷하게 해 놓고……

그래서 기재부가 우리나라 경제 컨트롤타워니까 하려면 하고요, 안 하려면 모든 역량을 여의도로 집중해서 여의도를 금융지 중심으로 키우든지. 저는 이견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정태호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저희들도 착안이라 그럴까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홍콩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원래 아시아권의 금융중심지였다가 중국에 편입되면서 이제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나오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일차적으로 싱가포르로 많이 옮겼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도 면적이 좁은데다가 이렇게 몰려오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다른 데가 어디냐 하는 쪽에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한국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업계랑 같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기대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부산하고 서울하고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부산은 사실은 그 지역의 그것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해양, 선박 이런 쪽이 아마 뭔가 특화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소가 조금 나눠져 있기는 한데 자본시장 쪽에 어떤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고 거기에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특구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부산이 서울만큼 커 올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홍콩과 관련된 여건, 그걸 어디다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세제지원 이 부분은 좀 연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상 부분은 그런 점에서 고민을 더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다음 207쪽, 각종 지역특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8건의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개별 특구의 현황은 생략하고, 221쪽입니다.

정부안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의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지정목적 달성에 따라 지정해제된 경우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들은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몰 연장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추정 예외 사유 관련해서, 현행법에서는 해당 감면사업에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창업한 기업 또는 신설한 사업장이 폐업 등 경우 기업 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의 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를 그중 하나의 사유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지정해제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나 개발사업 완료 등에 따른 사업구역 지정해제는 감면 대상 기업 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적용기한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양한 안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구와 관련된 것은 기한을 25년 말로 한번 맞춰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같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25년으로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추정 예외사유 신설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해서 그렇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신용정보보호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하고자 하는 류성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내용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온라인상의 개인데이터의 활용 규모와 범위가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데이터의 관리 및 처리에 있어서 개인이 주체적으로 이를 관리·활용하는 권한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 접근 방식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으로는 신용정보 통합조회, 신용관리, 정보관리, 자산관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23년 11월 현재 66개사가 허가를 받았으며 29개사의 허가 신청에 대해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8쪽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신용정보 보호설비에 투자한 금액 그리고 신용정보 처리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1%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초기 마이데이터산업 안정화와 데이터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설비투자과 관련하여 현재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금액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시설투자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신용정보 처리에 지출한 비용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업권이나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마이데이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비용에 대한 지원인데요. 마이데이터업에 대한 지원이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 설비투자의 부분은 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해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용정보 처리비용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딱 이 비용…… 손비로 인정되고 있는데 또 다른 세제상의 지원까지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제가 마이데이터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아마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중소기업과의 복리후생시설 등 공유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김상훈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내국 법인이 해당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경우에 그 공유에 드는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중소기업과의 복지 공유를 위한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구인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대기업과 공유할 수 있는 성격의 프로그램은 콘도 등 일부 시설에 불과하며 중소기업과 공유에 소요된 금액의 범위 설정이나 세무검증이 곤란한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둘째, 대기업의 콘도 등 휴양시설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것은 대기업 임직원의 복리후생이 감소하고 내부적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단순히 중소기업과의 공유비용을 손금산입하는 것만으로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고하

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셋째, 현재 내국법인이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다른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 하는 등 여러 제도가 운영 중에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떻게 확인되고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야 하고 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을 거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런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되 집행 가능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주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질문 겸 자료 요구일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현행법 제8조의3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제도가 있다고 언급을 하셨잖아요. 거기의 실적이,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는지.

○소위원장 류성걸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김주영 의원님안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서 현재 군산, 제주, 강원 고성, 보성, 시흥, 5개 지역에서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것이 김주영 의원님이 같이 발의하신 건데 이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에는 현재 조성 중인 해양레저관광거점이 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일부 예상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의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특구 입주를 활성화하고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양레저특구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세액감면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같이 발의한 특별법안이 지금 농해수위의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소위에만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먼저 이 근거법이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고 논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다른 상임위의 심사 과정을 봐 가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다음,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5건의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올해 6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 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중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의 내용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개인·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조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시·도지사의 신청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1쪽에 보시면, 정부가 발표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내용 중에서 1·2번이 소득·법인세, 상속세 그다음에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주택양도세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체로 반영을 한 게 배준영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발표한 내용이 현행 제도에 비해서 차이점 있는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법인세 감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위기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5년간 100%, 2년간 50%인데 기회발전특구에서도 5년간 100%, 2년간 50%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회발전특구에, 지방에 이전할 경우에 종전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인데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처분 시까지 끝까지 과세이연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펀드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 9% 신설하는 부분이고, 농어촌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그 범위를 기회발전특구 내의 주택에서도 농어촌 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 특례조항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내용입니다.

내용은 251쪽입니다.

5건의 개정안들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배준영 의원님 안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 개설한 기업과 이전기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몰은 26년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례의 내용은 5년간 100%, 2년간 50% 그다음에 양도한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영구히 과세이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현행법의 세제지원과 비교할 때 개정안들은, 우선 홍성국 의원님과 박성민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외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고, 배준영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에게는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감면입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는 효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개정안들에 대해서,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겠습니다.

254쪽 하단, 다만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범위를 설정할 경우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세제와 중첩될 수 있고 지방에서 지방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게 되어 과세 불형평성 문제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둘째, 적용 대상을 창업중소·벤처기업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한적 효과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셋째, 기존 위기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거나 상향하여 규정할 경우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의 낙후지역으로의 이전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겠습니다.

넷째,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의 종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관련해서는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57쪽,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안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개정안들은 기회발전특구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청년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장섭 의원님 안은 청년근로자에 대해서 5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하고, 홍성국 의원님 안은

3년의 기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 박성민 의원님 안은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입니다.

259쪽입니다.

기회발전특구로의 근로자 또는 청년근로자의 이주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특구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현재도 특구 여부 등 기업 소재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최대 5년간 90%의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셋째,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대기업 근로자에게까지 세제 지원을 부여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겠습니다.

다음 260쪽, 다 번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하고자 하는 배준영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개정안은 전용계좌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회발전특구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9% 분리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펀드는 60% 이상을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하고 1명당 1개의 전용계좌와 납입한도 3억 원 이하를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26년 말까지 가입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62쪽입니다.

개정안은 민간자본을 통한 기회발전특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회발전특구펀드가 아직 실체가 없고 구체성이 부족해서 투자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금을 유인하는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둘째, 개정안과 유사하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자본 유입을 목적으로 21년부터 도입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작년 말 일몰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셋째, 개정안의 세제 혜택은 전용계좌를 10년 이상 유지해야 되는데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일부 자산가만이 개정안에 따른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64쪽, 라 번 기회발전펀드의 주식·출자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산자위에 계류 중인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기회발전투자기구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출자해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6쪽 검토의견은, ‘다만’ 이 부분은 이 기회발전특구법이 제정되기 전에 만든 의견이라서 다시 대체를 하겠습니다.

현재 창투사가 직접 또는 벤처펀드를 통해서 투자해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심사했습니다만 정부안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지분 양도 시 그 양도차익에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회발전특구펀드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출자해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과 같이 그만큼의 비과세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마 번 기회발전특구 주택 취득 시 양도세의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배준영 의원안입니다.

기회발전특구 내 1세대 1주택자가 25년 말까지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회발전특구 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상 보유할 것을 전제로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다만 특구 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현재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큰 기회비용 없이 기회발전특구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투기적 자본의 유입으로 기회발전특구 부동산시장을 과열시켜 오히려 특구 내 근로자의 정주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70쪽의 둘째, 지금 현재 읍·면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등에 소재한 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보아서 개정안과 동일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과세특례가 새롭게 적용되는 지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도시지역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기회발전특구의 정의상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구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271쪽,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공제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구자근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272쪽,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님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을 5억 원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 시에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서 상속세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273쪽,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제액을 기존 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요건 중 증여일 이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시에는 4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및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 취지가 있겠습니다.

274쪽, 다만 2022년 법 개정으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공제한도가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동 특례가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제액의 추가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기회발전특구 관련된 사항은 242쪽에 정부 발표와 현행법 규정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배준영 의원님 안을 정부안으로 보면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것하고 또 정부안에 포함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소득 관련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기회발전특구, 242페이지의 정부 발표한 것하고 현행하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취지를 말씀드리면 아마 나중에 설명드릴 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기회발전특구라는 제도가 입법이 되고 여기에 세제 지원을 어디까지 줄 거냐 하는 데 대한 고민입니다. 세제 지원을 많이 주자고 하는 쪽에서는 이전할 때 기업들한테 세를 까 주자 또 심지어는 내려가는데 법인세를 아예 까 주자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만 또 거기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까 주자, 굉장히 다양한 요청들이 있고 검토 대상이 있었는데 저희 정부가 낸 안은, 첫째로 이전하는 기업한테 세제 지원을 더해 주자 하는 부분은, 그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아주 낙후된 데는 더 많이 주고 하는 이렇게 이전에 대한 세밀한 세제 혜택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이 현재로는 도대체 지자체별로 어디에 이걸 설정할지를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앞으로 지정이 될 텐데, 거기에다가 또 기존의 것보다 더 많은 걸 주면 기존 것을 완전히 훼손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 이전의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체계를 갖추어 놓은 걸로 하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어느 지자체는 굉장히 낙후된 데다가 기회발전특구를 만들 경우는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되고 어디는 조금 발전된 데를 할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 세제 지원을 받는 형태로 차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그 틀을 유지하자.

다만 새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전 네트로 늘어나는 거니까 그것은 세제 지원을 좀 과감히 해줘서 유인의 효과를 가지자 하는 측면으로 일단 기업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의원님들은 창업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기업까지, 입주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세제 감면을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정부는 그런 취지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최소한 그

걸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든 개인이든 세금상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로 이전할 경우에는 과세이연율,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는 이연해 주겠다 하는 부분, 그리고 개인이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기업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가면 아무래도 주택을 팔 수도 있지만 거기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불가피하게 기회발전특구 내의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그 규모는 제한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한해서는 그 주택 수에서 빼 주겠다 이런 정도의 저희 정부안을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여러 의원님들이 안을 주신 부분들 중의 하나 큰 항목이, 소득세도 좀 까 주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서 근무하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방으로 가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 소득세를 한 90%까지 지금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대기업이 이전하는데 거기 따라가는 직원들까지 근로 소득세를 감면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조금 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 관련해서는 기회발전특구펀드라는 게 지금 정부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그 특구가 과거의 뉴딜펀드와 비슷한 세제 지원 구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 효과 면에 있어 가지고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뉴딜펀드하고 비교를 하자면 뉴딜펀드의 경우는 공모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주로 투자하는 펀드 형태로 한 것에 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펀드는, 어차피 기회발전특구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수익이 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그것은 결국은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소위 큰손들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3억까지 허용을 해 주고, 금액 한도도 2억이었는데 지금 3억까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펀드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 제도를 제안했다, 방향을 발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호 위원 이게 균형발전법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것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도시·기업도시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지방전략산업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때 규제특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와서 또 기회발전특구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다 지원정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되돌아보시면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제가 보기에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예요.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걸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균형발전정책을 한번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과연 가장 효율적인 지원정책이 뭔지를 살펴보고 이런 세제상의 혜택들이 애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대기업은 월급이 많으니까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이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대기업 본사가 이전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리쇼어링할 때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올 때 지방으로 가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지방에서 창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건가인데, 그래서 대기업이 지방 이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기업들이 지방 가면 사람을 못 구한다는 거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방으로

못 나가는 게 평택이 마지노선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방에 가면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대기업이 이전하면서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다 빠져나갈 텐데, 누가 대기업에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도식적으로 대기업 사람들은 월급 많이 받으니까 혜택 못 준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취지는 어차피 우리가 한 20년 동안 균형발전정책을 해 왔는데 그러면 각 정부마다 해 왔던 일들을 한번 잘 평가를 해서 가지고 근본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잠시만 답변 짧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 점검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씩 시도를 했는데 사실 딱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보니까 또 새로운 걸 시도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고, 저희도 그 점은 유념해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소득세 부분은 대기업이라서 사실 안 해 준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세 부분을 지역에 내려갔다 그래서 감면해 줄 경우에 이걸 악용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확인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추가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은 아니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저희들이 세법은 9월 1일 자로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 말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방안을. 그러다 보니까 정부입법을 다시 내는 데 너무 촉박해서 배준영 의원님 안에 저희 정부 방안을 담아서 냈기 때문에 별도로 낼 생각은 없습니다.

○장혜영 위원 그러면 배준영 의원안이 곧 정부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장혜영 위원 일단 정태호 위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통시적으로 각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했었던 것들에 대한 평가와 그런 분석을,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은 위원들에게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행으로도 다양한 특구나 그런 사업 정책들을 통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세특례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지금 정리해서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장혜영 위원 여기서 지역별로 파격을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다른 데에서 물침대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으시니까 실제로 어떤 지역에 어떤 만큼의 특혜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다들 공감을 하지만 또 저희가 조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최저한세 미적용 문제라든지, 말씀하셨지만 소득세를 대기업 직원들한테까지 감면해 주는 문제, 중첩과세, 투기 유발 그런 다른 문제들도 일관되게 보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자료를 좀 촛촛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 말씀하셨듯이 관련되는 자료를 정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특구 관련된 사항도 그렇고, 다른 특구도 그렇고 중복, 삼복 이런 형태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기회발전특구에 꼭 필요한 게, 이미 기존에 있던 특구 지원하고 어떤 관계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유동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지금 256쪽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특구하고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정정훈 256쪽이 방금 장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각종 특구에 대한 세제 지원입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하고 관련 없이……

○기획재정부제제실장 정정훈 여기에서 추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특구가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기획재정부제제실장 정정훈 이 자체도 이미 중복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또 지정할 수도 있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아니면 새로운 지역을 또 지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동시에 중복적으로 적용되면 그 기업이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이지요.

○**유동수 위원** 그러면 세제실에서 이거 내용 파악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들에 대한, 산단 내 입주 기업들의 실태들을 좀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됐든지 이런 게 있는지, 전체 분양이 됐는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유동수 위원** 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말씀하신 그 자료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자료기는 한데 결국은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설립 이후의 각종 건설 현황, 미분양 현황, 입주기업 현황, 고용 현황 이런 걸 다 받아야 되는 문제라서요.

○**유동수 위원** 아니, 다 하지 말고 미분양 부분만 한번 쥬 보세요, 다른 부분까지 하면 너무 많아질 것 같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부처에 확인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자꾸 지적하나 하면 국가는 국가산단을 가고 지방은 지방산단 가고 민간은 민간산단 가고 계속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산단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각자 산단의 개발주체가 되거든요. 지금 미분양 산단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기회발전특구를 또 지정한다, 그러면 여기 것 빼서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민간 부문을 잠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 미분양 상태로 있는지, 여기 256쪽에 있는 현행 지역특구 이거는 나름대로 다 법 내지는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지금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조차도 잘 안 되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필요하다면 지정하고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활성화시키고. 점점 무서워서 이거 조금, 대기업 소득세 약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작은 고민

을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엄청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수도권에, 대도시권에 있는 근로자들도 내려가서 살고 이런 정도로 파격적인 지원을 해 줘야지 이 법을, 기회발전특구를 만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찢끔찢끔 하잖아요. 그러면 민간 잠식하고요, 다른 지방산단 개발하는 데 잠식하고요. 저는 지금 이미 거의 포화에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간사님께서 아주 근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특구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특구 관련된 총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특구가 되면 대체효과 형태로 가서 결국은 여기 게 저기 움직이고 저기 것 움직여서 신규로 창출되는 효과보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정리가 될 수 있으면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해서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런데 유동수 간사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당연히 이해하고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체도를 보면, 예를 들면 여기 256페이지에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그거는 특별한 산단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그냥 그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게 산단이든 아니든 그냥 되기 때문에……

○**유동수 위원** 그러면 바로잡기가 어렵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주도에 있는 산단의 미분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곧 제주투자진흥지구의 미분양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그거하고 이거는 약간 다른 겁니다.

○**유동수 위원** 아니, 이게 도를 전체 지정한 겁니까? 이것도 어느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제주도는 아마 전체일 겁니다.

○**유동수 위원** 아마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다른 지역은 또 제한돼 있는, 금융 같은 경우는 부산 문현동 이렇게 딱 지정돼 있지요.

○**유동수 위원** 그럼요, 이렇게 딱딱 지정된 경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거 관련된 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최대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이게 뭔가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볼 때도 지금의 지원 체계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야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가 일목요연하게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 법적으로 구분해 놓은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이 돼서 얼마큼의 지원이 가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관련된 자료를 정리를 해서……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를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소위 자료 4권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위 자료 6권에 있는 국세기본법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8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148)

28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703)

28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544)

28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588)

2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0892)

28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0)

29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585)

29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779)

2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829)

29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841)

29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949)

29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042)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284항부터 제295항까지 이상 12건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회에서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1쪽입니다.

1번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는 한무경 의원님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 국세의 경우 5년, 역외거래 7년이고 상속·증여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일정한 사실이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정부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따라서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실효세율이 변경돼서 그 소재지국이 해당 기업에 부과했던 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우리 과세 당국이 법인세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무경 의원님 안은 역외거래에 대해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현행 7년에서 10년으

로 그다음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미제출한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안은 내년 도입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한 과세권 행사를 통해 부당한 세수손실을 막고 국제적 합의에 따른 조세정의를 높일 수 있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6쪽, 한무경 의원님 안은 역외거래에 대해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탈세 등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고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과세정보 획득 이후에도 과세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연장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서 역외거래에 대한 제척기간을 연장한 바 있고 일반거래의 부과제척기간과의 형평성과 납세자 부담 및 법적 안정성,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정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취지를 설명드렸고요.

한무경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18년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서 역외거래에 대한 제척기간을 늘렸습니다. 그게 외국에 비해서 좀 긴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일반적으로 15년으로 역외거래에 대해서 늘릴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하는 경우도 15년이 돼 가지고 균형이 좀 안 맞는데 이것을 또 20년 이렇게 길게 늘리는 것은 너무 길어지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을 신중히 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2번 고액채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양경숙 의원님과 김영진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억 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10년, 5억 원 미만의 국세

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양경숙 의원님 안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국세에는 10년,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국세에는 15년, 50억 원 이상의 국세에는 2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김영진 의원님 안은 10억 원 이상의 국세에 대해서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고액채납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함으로써 고액채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고 국세징수권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겠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 채납하여 명단이 공개된 신규 고액채납자가 2018년에 495명에서 22년 1090명으로 증가하는 등 고액채납자와 채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채납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국가의 조세채권 확보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현행법상 납세 독촉, 압류 등을 통한 소멸시효 중단·정지 제도가 있어서 이를 통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시효 연장을 통한 조세채권 확보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례 및 타 법률상 채권의 소멸시효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10년, 일본은 5년, 프랑스 4년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소멸시효가 짧지 않은 편이고 민사채권, 상사채권, 일반 국가채권 등 국내의 다른 법률상 채권과의 균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조세채권 확보라는 측면하고 납세자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비교형량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시효를 더 늘리는 것이 조세채권 확보라는 어떤 실효성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너무 길게…… 저해하는, 불확실하게 한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이것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정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3번은 나중에 8권 심사하실 때 같이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것……

○소위원장 류성길 예, 그렇게 하지요. 김영선 의원님 법안이 비슷한 취지로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66쪽 국세징수법 관련해서도 나중에 함께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4쪽입니다.

임대인 변경 시 국세 우선 조문을 명확화하는 박광온 의원님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해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정한 보증금 및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에 대해서 국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정부안은 국세의 우선 징수 규정의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를 ‘강제징수 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로 변경함으로써 매각의 방법에 파산절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에서 국세를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에 한정한다’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광온 의원님 안은 작년에 발의된 것으로서 작년 말 세법 개정으로 이미 현행법에 반영되었으므로 입법 취지가 달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라는 표현이 매각 방법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행법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보다도 협소한 표현이므로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이라는 예시적 열거 표현을 통해서 매각 방법에 파산 절차가 포함되는 것으로 합리적인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17쪽 하단입니다.

두 번째, 양도·상속·증여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 전에 설정된 권리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지만 직전 임대인이 전세권 등 권리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던 국세의 한도 범위 내에서는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는 규정을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양도 등으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 선의의 제삼자인 임차인 등을 보호한다는 현행 조항의 개정 시 취지와 전세 사기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의 입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징수하는 현재 임대인의 국세를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걸 18쪽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자 A에서 소유자 B로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 소유자 A와 임차권을 설정했던 임차인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소유자 B가 국세를 체납해서 소유자 B의 주택을 경매를 하는 경우에 어디까지 국세가 우선하느냐라고 봤을 때 현재는 소유자 A가 100이라는 만큼의 국세를 체납했을 때 그 100의 한도 내에서 체납된 B국세를 다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세 B1, B2, B3하고 B4에서 10만큼, 즉 100한도만큼 B의 국세를 우선 징수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지금 임차권설정일보다 빠른 B1과 B2의 한도 내에서만 국세가 우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의의 제삼자인 임차인이 전세권 등 설정 당시 우선 징수될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체납 부분에 대해서조차 임차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국세 우선 징수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 등의 설정일의 우선순위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전세권 등 설정 당시 임대인·임차인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산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현 임대인의 국세 법정기일과 전세권 등의 설정일을 비교할 법리적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셋째,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례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지난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을 위해서 국세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원래 법조문의 취지와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양도가 됐을 때 어느 채권까지 우선하느냐, 원래 소유자하고 새로 인수한 집주인하고의 채권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볼 거냐에 대해서 집행 과정에서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하게 됐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맨 마지막에, 이게 어쨌든 조문이 개정이 되니까 적용례를 좀 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으신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집행이나 해석을 현재 개정안을 낸 거와 같이 해 왔기 때문에 별도의 적용례가 꼭 필요하겠냐 하는 의견인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거라면 적용례를 두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19쪽의 둘째 부분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19쪽의 둘째 부분은 법리적 근거 차원에서 보면 일반적인 우리 국세의 우선권 원칙 그리고 임차인 등 채권자의 보호, 큰 틀에서의 법리적인 원칙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전문위원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맞는 것을 저희들은 다른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되 전세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국세기본법을 통해서 양보를 하겠다, 최대한 우리가 어떤 조세채권의 일실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법리를 뛰어넘어서 저희들이 양보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 기본법이 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특별법이니까, 국세를 우선하는 것도 특별이고 양보하는 것도 특별이라서 기본법리를 뛰어넘는 부분까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관이 방금 부칙과 관련해서는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하신 적용례를 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 다만 저희들의 실무적인 입장은, 혹시라도 만약에 이 법 시행 전에 저희들의 입법 취지와 다르게 법원 등에서 현재 조문의 형태로 봐 가지고 뭔가 전세권자한테 조금 불리하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했다고 하면 현재 저희들 입장은 그 부분들에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법 취지가 안 그랬고 지금 캠프에서 하고 있는, 아까 과산도 들어가기는 했지만 대표적으로는 국세의 강제 징수는 캠프 또는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고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것인데 만약 법원과 캠프의 적용이 달라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원래 발표한 내용, 캠프에서 집행하고 있는 세입자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 그 방법을 이 입법이 완성된 작년 1월 1일부터 꼭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위원 지적대로 불명확한 면은 있지만 이걸 저희들은 원래 입법의 보완, 명확화라는 차원에서 입법을 해서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고 최대한 납세자에게, 전세권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문위원님, 18쪽 첫 번째에 ‘선의의 제삼자인 임차인이 전세권 등 설정 당시 우선 징수될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채납 부분’, 무슨 말이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중간에 임차권 설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차권 설정 전에 그 소유자 A의 국세 채납이 100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세열람제도도 작년에 도입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임차를 들어갈 때 이미 그 집주인에게 100이라는 채납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설령 임대인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전세 들어가는 주택에 있어서는 주인이 100만큼의 채납 국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100만큼을 먼저 돌려받지 못하겠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도 말했지만 작년에 개정된 법이 물론 취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현행법 문언상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0 범위 안에서 소유자 B의 국세 B4까지도 다 우선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정부하고 법원하고 해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명확하게라기보다는 원래 취지가 앞에만 하던 하는 거였더라는 취지에서 이 법을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실장이 말한 것처럼 부칙에서 과거에 이미, 올해도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까지도 이렇게 해석하겠다고 하면 사실 그건 정부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뿐이고 만약에 법원에서 그렇게 해석 안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할 때도 이걸 아주 진짜 세밀하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현행은 B1 30, B2 30, B3 30하고…… 10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 차이?

○전문위원 김경호 B4가 30인데, 그런데 전체 한도가 100이기 때문에 100 한도까지 채운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든다 이런 이야기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정부안으로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5번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현재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도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해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납부지연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개정안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로서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해서 양도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으로써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납부지연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상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부분은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만 양도세 부분은 명시적인 제외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가 적용되는 채무인수분에 대해서도 증여세 부분과 동일하게 가산세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즉 채무 인수 부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증여가액이 산출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여자산 평가 방법 차이에 따라서 가산세를 적용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안은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조문과 연계해서 증여

재산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개정안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나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세액공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투자세액공제 적용 절차를 종전에는 먼저 시설인정한 후에 세액공제 신청하던 것을 먼저 세액공제 신청을 하고 후에 시설인정을 받는 것으로 개선함에 따라서 세액공제 신청 시점의 공제 대상 투자금액과 사후 시설인정 심의를 받은 투자금액 차이로 발생하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함으로써 법인의 투자 촉진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개선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 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정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특별히 정부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서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조문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가 가산세 적용하지 않으려면 이 조문은 어떻게 합니까? 잠정 의결 내용에……

○전문위원 김경호 그러니까 혼인 증여재산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그것도 빠져야 되는 거고요. 그게 된다고 했을 때 같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그 내용에 따라서 같이 수정되는 것을 전제로……

○소위원장 류성걸 이 내용은 나중에 함께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27쪽,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

급가산세의 한도 적용 및 소기업 가산세 한도를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진선미 의원님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1억 원, 중소기업은 50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한도 적용 대상 가산세지만 계산서 미발급, 가공·허위 발급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에 제한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세법은 지연발급 등 미발급을 포함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전체에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법인세법상 일정한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과 동일하게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하고, 진선미 의원님 안은 소기업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법인세 계산서 미발급으로 가산세 한도 미적용 부분 중 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지난 후에 연도 말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인 지연발급에는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계산서 지연발급은 단순 협력의무 위반으로 가산세 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므로 착오나 실수로 인한 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세금 가산을 구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서는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과 법인의 과세 형평을 제고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납세협력능력이 높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자칫 계산서의 발급 시기 준수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안은 소기업의 가산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적 제재이므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성실납세에 역행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법인세의 경우도 소득세하고 한도 적용 부분은 좀 맞추겠다는 취지고요. 그러니까 꼭 법인은 납세협력능력이 다 개인보다 높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체계적으로는 두 개를 맞추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진선미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국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행정적인 제재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소기업과 중소기업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경우에…… 그러면 개인의 경우도 지금 5000만 원인데 소기업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또 차이를 뒀다 될 이유를 찾기도 좀 어려운 측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이 어떤 거예요? 지금은 법인하고 개인하고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같이 가산세 한도를, 지연발급에 대해서 하자는 건데 실제 기업들이 이 한도가 없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유로 정부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저희들이 법체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건의도 받고 하면서 법체계가 안 맞으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가끔씩 개인은 이렇게 해 주고 하면서 법인은 왜 똑같은 취지로 안 해 주냐,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체계를 맞추는 차원이기 이것 때문에 크게 힘들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용진 위원 전문위원의 지적처럼 이렇게 되면 고의로 계산서 발급 시기를 늦춘다든지 이런 우려는 없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럴 우려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미 발급을 한 경우기 때문에, 아예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한다는 것은

탈세를 하겠다는 상당한 의지가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이 안 되니까 무한정으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지……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3개월 과세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원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묶어 가지고 부가가치세라는 걸 3개월에 한 번씩 신고납부를 하니까 3개월 내에 하는 게 원칙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발급을 못 했다, 그런데 신고는 다음 달 25일까지 하니까 ‘내가 이걸 놓쳤네’라는 거를 25일 이내까지만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탈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거의 힘들고 99.9%는 착오에 의한 누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가끔씩은 큰 금액을 착오할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 이름을 잘못 적었다든지 아니면 사업장 번호를 잘못 적었다든지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다고든지 그런 큰 금액을 착오를 했을 때, 그런데 그걸 신고납부하기 전에 다 정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큰 거를 실수했더라도 한도를 적용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부안으로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다음 7번 조세불복 시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불복절차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줌으로써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현재 전국 321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조세불복 시 법인이 아닌 개인에 한해서만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선대리인은 현재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소유재산 5억 원 이하의 개인으로서 청구금액 5000만 원 이하의 조세불복 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개인에게 한정했던 국선대리인 선정의 신청을 수입금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영세법인에게도 가능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다만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영세법인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여 재산가액 요건이 있는 개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의 보유 자산가액 검토가 안 될 경우에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등 영세납세자로 보기 어려운 법인에게도 국선대리인이 지원되어 개정안의 취지가 오용될 여지가 있어서, 35쪽에 수입금액과 자산가액을 판단해서 영세법인을 판단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이 저희 안하고 약간 다른 의견인데요. 개인의 경우는 수입과,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는데 법인의 경우 저희들이 제안한 법은 보면 수입금액만 있고 법인의 재산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저희들이 지금 외부 세무조정 대상 및 세무조사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세법인의 경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법인의 경우는 개인하고 좀 다르게 수입의 규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아주 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경우는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소득은 작은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지만 법인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좀 적고, 실제 저희들이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법인의 자산현황을 보니까 거의 한 4분의 3이 5억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정하려고 하면 그런 측면 감안해 가지고 개인처럼 재산 규정도 정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실익은 크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수입과 재산을 개인에게만 하고 법인은

그것과 관계없다,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이 재산가액과 수입금액을 어떻게 하면 조금 반영시킬 수 있을까요?

○전문위원 김경호 지금 아마 국세청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국세청에서 실제 하고 있는 부분을……

○소위원장 류성걸 국세청에서 혹시 나오신 분께세요?

그러면 마이크 앞으로 가시고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국세청납세자보호관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변혜정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수정의견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납세자의 경우와 형평을 맞추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법인이 4분의 3 정도 차지해서 이 규정의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 법령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는 영세법인으로 그 규모를 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데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용진 위원 하여튼 그 의견하고 연계해서 보면 현재 우리 자료에 보면 국선번호인이 321명이 활동하고 있고 매년 지원 건수는 300, 400건 이쯤 돼요. 재산요건을 영세법인에 두지 않으면 지원 요청 건수가 더 많아질 것이고 재산요건을 두면 조금 더 줄어드는 거지요?

○국세청납세자보호관 변혜정 실질적으로는 그 차이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고용진 위원 그렇지요. 어찌 됐든 좀 더 확대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만 지원되던 국선번호인을?

○국세청납세자보호관 변혜정 예.

○고용진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어요?

○국세청납세자보호관 변혜정 사실 저희가 지금 매우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기본 책정된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영세법인의 경우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본다고 그러면……

○국세청납세자보호관 변혜정 그러면 제한을 두는 게……

○고용진 위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요건을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국세청 걱정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문안은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수정의견?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문안은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문안을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또 국세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소위원장 류성걸 수정한 의견을 나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36쪽,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 및 조세심판관의 임명철회 사유 등을 보완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현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두고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개정안은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를 3년,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상임·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는 것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임기를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고 있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그룹을 확보하여 조세심판원 운용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는 결국 심판청구 결정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조세심판관 면직 및 해촉사유를 임명철회 및 해촉사유로 변경하고 사유를 보완

하려는 것으로, 현재 면직 및 해촉사유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다음에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로, 그다음에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확대하고 추가로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조세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에 조세심판관의 회피·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해서 임명철회 및 해촉사유를 강화함으로써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 확대와 더불어 균형 잡힌 조세심판관 운용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정안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을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조세심판관 동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을 포함하도록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행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상임조세심판관 전원과 상임조세심판관 동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세심판관 총 16명이라는 고정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보다 회의 성격에 맞게 유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입니다. 상임조세심판관 전원을 기본으로 한 현행에 비해서 민간 전문가인 비상임조세심판관에 더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구성한 것으로 이해되고 조세 영역에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해진 환경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설명은 전문위원님이 드렸고요.

연임·중임 건은, 취지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비상임심판관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걸 중임만으로 제한하면…… 그러니까 딱 6년 할 수 있습니다, 연임을 하든 띄엄띄엄 하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전문가인 민간 전문가로 비상임위원을 충원하기가 쉽지 않은 점, 이런 점이 감안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제가 지금 설명된 내용만으로는

이 개정의 취지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조금 더 여쭙보고 싶은데 여기서 탄력적인 회의 운영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기본적으로 전원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전원을 한 이유가 상임심판관이 제 기억에 4명인가 시작했던가, 하여튼 4명, 5명 정도였습니다. 5명인 기간이 꽤 오래 있었는데 그때 최소 인원이 11명이고 전원이 들어와야 되고 그거의 동수 이상의 민간위원이 들어와야 되니까 최소한 11명만 연락이 되면 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명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무조건 최소 17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7명을 구해 가지고 그 날짜에 시간이 되느냐 또 그날 그 안건과 관련된 나름의 전문가…… 아무나 막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시간 되는 사람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7명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합의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다른 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전원이 무조건 다 와라’라고 하는 규정은 없고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의 안건에 적합한 그런 위원의 구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 조직이 확대된 측면을 고려해서 합동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도 이제 12명 이상만 모이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장혜영 위원 그리고 또 배석 숫자는 어떤 기준으로 누가 정하는지도 궁금하고 상임·비상임 비율을 정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도 어떻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상임·비상임은, 무조건 비상임은 50% 이상, 그건 법에 들어와 있고요. 그거는 절대 어길 수 없는 대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상임의 경우에는, 물론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정할 텐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세심판원에서 위원장이 단독으로 그때그때마다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자기들 내부 규칙을 정해서 객관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비상임도 똑같이 합동회의라는 게 있고 일종의 분과회의라고 해서 4명에서 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 4명에서 하는 회의도 위원장이 그때그때마다 안건을 보고서 ‘이번에는 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어떤 전문성과

순서 이런 걸 정해 가지고 객관적인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혜영 위원 내부 규칙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그걸 법에다 다 적을 수는 없고 또 그렇게 적는 위원회도 없고요. 그것은 당연히 내부 통제에 의해서 운영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혜영 위원 그걸 저희가 볼 수는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마 공개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확인해서 공개 가능하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 유동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아까 연임, 중임 관련해서…… 이게 1회만 중임 가능, 개정안은 1회만 연임 가능 이렇게 해 봤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유동수 위원 그러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니요, 저희들이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법제처의 기본적인 임기와 관련된 해석은 중임이라 하면 평생 딱 한 번, 두 번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A라는 분은 상임 심판관을 아까 차관이 설명했듯이 평생 6년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연임만 가능하다는 것은 6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연임을 못 하는데 3년 쉬고 나면 다시 또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계속 오래하는 것은 막되 이 사람이 보니까 정말 잘하더라, 꼭 이 사람이 필요하더라는 판단이 되면 3년을 쉰 다음에……

○유동수 위원 그러면 용어를 ‘연임은 1회만 가능’ 이렇게 바꾸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 정리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적은 거고요.

○유동수 위원 그렇게 바꿔 줘야 돼, 이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엄격하게 해석이 된다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알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로 인한 부작용 같은 게 우려되는 건 없어요? 제가 볼 때 1회만 중임을 하느냐 아니면 연임을 한 번만 하느냐에 따라서 특정인이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이 경우는 쉬었다

또 하고 쉬었다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건 없냐는 말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결국은 비교형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충분히, 정말 에이스를 활용 못 하게 되는 단점 또 에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진 위원 제 얘기는 현장의 감을 묻는 건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현장의 감은, 지금 심판원에서는 워낙 사건이 폭증을 하고 조세 부과 건수도 많아지고 쟁송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중임 정도만 하고서도 충분히 회의가 원활하게 잘 돌아갔는데 지금은 중임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6년을 다 해 버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에이스를 두고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고 막상 시켜 보니까 아쉽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해축도 쉽게 하고 연임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새로운 유능한 심판관을 모셔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맞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금액도 나와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얼마입니까? 한 건에 15만 원입니까? 건당 얼마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20만 원 준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기존의 풀 속에서 계속 연임이나 중임 이걸 논하는 것도 의미 있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셔서 풀을 좀 더 다양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풀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이 정확한 지적 해 주신 거고, 그래서 과거에는 한 심판부를 구성하면 딱 고정돼 있는 멤버들을 계속 돌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인재 유입이나 사전의 어떤 외부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전체도 풀로 구성하고 또 심판부의 경우에도 누가

들어갈지 사전에 모르게 풀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수나 이런 측면에서의 대우는 또 예산실하고도 관련된 문제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견 여담이기는 한데 보수에 비해서는 여기에 상임심판관이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명예롭고 자기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위원장님 취지는 저희들이 100%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들어오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지.

어쨌든 이렇게 잠정 의결을 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풀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소위원장 류성걸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41쪽,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제공 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는 강준현 의원님과 김승원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정보의 비밀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아홉 가지 경우에 한해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김승원 의원님 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제공한 과세정보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근 고용부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화번호 등 과세정보를 요구하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서 개정안은 개인의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의 취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44쪽, 다만 개정안 관련해서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은 공익 목적의 협력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정보 제공사유 등에 대한 문의 급증 등으로 불필요한 국세행정력이 낭비되고 본연의 업무인 세무행정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과세정보 요구기관이 소관 업무의 목적을 위해서 과세정보를 요구하였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방안이 업무 관련성 및 연락 편의 등의 측면에서 더 적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법률에 해당 납세자에 대한 통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강준현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조항 본연의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과세정보 제공 요구 시 문서에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요구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현행법에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개정안은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고 주의적·선언적 조항을 신설해서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과세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과도한 국세행정력의 부담이 있는 것 같고, 취지로 봤을 때는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기관이 필요하면 통보를 하는 체계가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준현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함’ 하면서 너무 자세한 것까지 법률에 규정을 하는 체계라서 이 법의 취지는 살리면서 조문은 간략히 하는 것을 협의해 해서 수정안을 준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강준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강준현 위원 전문위원님, 시행규칙에 다 명기가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문위원 김경호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썼었는데 정부도 그렇고 이걸 받겠다고 해서 의원님 안대로 법에 올리는 걸로……

○강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의원님 안대로 올리는데, 100%는 아니고요. 99% 올리는데 5개를 다 열거하지는 않고 그중에 한 두세 개만 예시를 하고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을 가져오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논의를 해서 강준현 의원님이 제시하신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하면서도 조금 법 문안을 간소화하는 그런 형태로 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조금만, 위원장님.

○**소위원장 류성걸**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많이 거론이 됐어요. 국세청이 이것을 준수한다는 취지로 철저하게 정보 제공이나 자료 제공은 안 하는데 언론이나 기타 자료에 과세정보가 공공연히 누설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거든요. 자체에서 미리 빠지거나, 마치 피의사실 공표처럼.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올라온 개정안은 그런 취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김승원 의원안하고는 조금……

제가 이것 보면서, 성격은 다르지만 이 9개의 경우에 과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어디서 이걸 가져갔는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알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통계청에서 요구해서 가져갔다든지 또 법원에서 가져갔다든지, 그런데 단점은 너무 많은,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발 민원이 생기니까, 행정수요가 생기니까 어렵기는 한데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디론가 과세정보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걸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려면 김승원 의원안처럼 그걸 납세자한테 알려 주자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보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기본적으로는 지금 국세청에 따르면 22년에 약 1억 6000만 건의

과세정보가 제공이 됐다고 그러합니다.

○**고용진 위원** 1억 6000만 건이 제공됐다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런데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43페이지 표 6번에 보시면 사회보험운영기관 이게 4대 보험, 소위 말하는 건보료 이런 것들에 대한 겁니다. 건보료나 그런 4대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국세청 소득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득 자료는 국세청밖에 없으니까. 6번에 따라서, 관계 법률에 따라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부나 노동부 이런 쪽에다 자료를 줍니다. 그것은 전 근로자의 또는 전 사업자의 소득 금액이 가는 거겠지요.

○**고용진 위원** 그렇다 그러면 사회보험운영기관 같은 경우 건수가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로 한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1번 같은 경우는 행안부하고 국세청하고 지자체하고 서로 종부세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국세의 일종의 같은 과표를 공유하는 법인세와 지방법인세, 양도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을 부과하기 위해서 또 지자체에다가 연간 아마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이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통제하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용진 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감 하면서 그런 문제 제기 계속 있었잖아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그렇지요.

○**고용진 위원** 9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국가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정도에 제공할 경우에는 통지를 한다든지, 하여튼 논의를 한번 기재부하고 해서…… 계속 기재위 국감 할 때마다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부딪히는데 결국은 다른 데 나가고 이런 것들을 제어한다든지 우리가 확인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게 추후 소소위 논의하실 때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 재작년인가요, 작년 국정감사 때 네요. 감사원이 예를 들어서 정부 산하기관에 1급들 과세정보 종이 한 장으로 다 내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목적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감사원이 내는 건 아마 본인의 동의하에서 뭔가 근거 법률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태호 위원** 감사원이 당연히 공공기관 직원한테 동의하라고 그러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통째로 할 수가 있냐 이거지, 문서 하나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국회의원 입후보를 하면 재산과 납세정보가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정태호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어떤 특정인이 공무상 비리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거나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급 이상 전체 직원들 과세정보 다 보내, 이렇게 문서로 할 수 있냐 이거지. 그렇게 했습니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개인을 특정하지도 않고 사건을 특정하지도 않고 소위 공직 감찰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아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개인의…… 과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걸 국세청에서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감사원에는 그걸 통째로 넘겨준단 말이지요.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국세청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고 조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것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근거가 있는 건지,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근거가 없을 거예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마지막에 답변을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관련되는 자료는 나중에 전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여기서 과세정보는 순수하게 세금 부과 정보만 포함되나요, 아니면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관련된 다른 정보도 포함이 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제일 큰 것은 소득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다, 아까 말씀드린 4대 보험 급부를 위한 것은 소득을 주는 것이고 그게 아닌 세무조사 결과 이런 것들은 아마 법원이나 국가기관, 여기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 법관이 발부한 영장…… 거기 영장에는 모든 걸 적시하면 조사 내용까지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쟁송 과정에서 다투는 경우니까 서로 사실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조사 결과가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면 과세정보가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 말고 그걸 벗어나서 제공되는 경우에 대한 규제 장치는 별도로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형벌상 징역형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조해진 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이 사항은, 강준현 의원님 안은 좀 더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과세정보 관련해서는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0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미심사 결정 사유를 추가하고자 하는 김수홍 의원님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고지 후에 청구하는 불복청구와 달리 세금 고지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 주고 이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 납세자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주어서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

및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7쪽입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 처분 하는 경우 등 일부의 사유에 대해서는 과세 전적부심사 청구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 일부채택, 불채택, 미심사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48쪽, 김수홍 의원님 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의 적용 제외 사유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받지 않은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법 해석상 같은 세목이라고 하더라도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을 현행보다 축소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함으로써 같은 세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액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정부안은 조금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제출했구요.

김수홍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이 마지막에 제시한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 이렇게 명시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오.

이 부분은 조문을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 안을 가져와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조세탈루·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인하하고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강준현 의원님과 정태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그리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 그리고 기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에서는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별로 지급률을 달리하여 포상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시행령에서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강준현 의원님 안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별 포상금 지급률을 법률로 상향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최저지급액 기준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려는 것입니다.

정태호 의원님 안은 국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강준현 의원안과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 및 지급률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최저지급 기준 징수금액을 1000만 원으로 인하하는 것은 탈세 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 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탈세행위 방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 기준 금액이 낮을수록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다만 법률로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신고포상금 등에 대한 지급금액 및 지급률은 시행령에 규정하면서 탈루세액 등 신고에 대해서만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신고포상금의 지급률과 최저지급 기준금액 등은 향후 경제 상황 및 정책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정태호 의원님 안은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관세법에서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 포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5쪽, 다만 국세의 부과·징수는 세무공무원의 기본업무로서 공적이 있는 경우 내부 성과평가에 따른 합당한 인센티브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기재부 의견이 있고, 둘째 국가재정법 및 예산성과금 규정에 근거한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제도개선이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 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일반 국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서 일인당 최대 한도 6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지급률 이런 부분을 법률로 올리자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법에 조금 더 명확하게, 상위법에 적을 거냐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위임할 거냐 하는 측면인데 지급률이나 이런 항목은 포상금 관련 다른 법률의 경우에도 탄력성 부분을 조금 중시해서 시행령에 위임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세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습니다만 공무원의 업무로 나왔을 때는 정부 내에 또 예산성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급하는 시스템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를 공무원에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포상금 기준금액 하향하는 것 관련해서는, 이 제도 자체가 거액이라 그럴까요, 좀 큰 금액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탈세를 잡아내고 하는 부분에 목적이 있는데 1000만 원까지 내리면 굉장히 건수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또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력에 비해서 그 규모가 적어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강준현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강준현 위원 제가 이걸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 탈루소득 금액이 몇 조 단위잖아요, 그다음에 징수율도 굉장히 저조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고민한 끝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이게 아무리 시행령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포상금 관련해서 국민들이 잘 몰라요. 신고율도 낮아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알권리 차원에서 법령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잘 검토해 보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탈루소득 개선이 안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결국 어느 법, 법률의 어느 체계에 넣는 게 낫는가는 판단의 문제니까요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정태호 위원 경찰들도 범인 잡으면 특진시켜 주고 포상금 주고 그러잖아요. 일반 공무원들과고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관세청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세청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그런 고생들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는…… 조세포탈, 고액채납자 이런 사람들 많은데 고생들 하는데 검토해 볼 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네요.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관세청에서 특진이 아닌 탈루세액에 기초한 포상금을 주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경찰.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세금과 관련된 것은 국세청이 있고 관세청이 있고 또 지자체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탈루자도 범죄자기는 한데 인사의 우대를 하는 것하고 탈루세액에 비례한 포상을 하는 것하고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져 자신의 정보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게 만드는 유인이나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시행령과 법률 간의 차이가 큰 것인지 하나하고, 법체계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국민에게 인지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 하나하고요, 국세청에다가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말씀, 그러니까 그 취지를 생각해 보면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자기가 하는 업무에 성실하게 일을 해서 나타나는 성과에 대해서는 그 제도 안에서 인센티브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노력해 가지고 또는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그렇게 해서 통상을 넘어서는 성과를 나타냈을 때는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통상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의, 정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을 때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 포상을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건 한번 좀 따져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접근했던 것은 세금을 거두는 게 어떻게 보면 국세공무원의 기본 임무인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정말 이것은 큰 기여를 했더라는 걸 가지고 따로 포상을 줄지, 이 법에 근거해서까지 포상을 줄지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잘 구상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 혹시 그런 제도가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특별한 노력이 들어갔거나 또는 특별한 노력과 함께 특별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한정을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탈루세액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는 할 텐데 거기의 몇 프로를 준다 이런 식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에 뭔가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지출을 절감한 경우 거기

에다 플러스로 특별한 어떤 징세수법을 개발하거나 제도를 개선해서 다국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탈루가 많은 업종의 또 계층의 제도 개선을 통한, 수법을 통한 어떤 포탈세액의 추징의 증대가 있으면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만약에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지급 기준을 정해야 되고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고, 이게 단순한 금액 기준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큰 대기업에 가서 조사하다 보면 금액이 커질 텐데 그것만으로 포상금을 줄 수는 없는 거고 정말 특별한 노력이 있었는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현행 예산성과금 제도에서 어느 정도는 작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아마 국세청은 이 안에 동의를 할 겁니다. 자기들한테 인센티브가 될 테니까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런데 전체 재정을 운용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고 쉽게 수용하기는 어려운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 관계도,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사항은 나중에 더 심도 있게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세기본법 관련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9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391)

29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477)

29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080)

29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7)

30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228)

30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584)

(15시21분)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6항부터 제301항까지 이상 6건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57쪽,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면제 및 면제분 충당을 위한 신용공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원발의안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현행법은 국세의 납부방법 중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 0.5%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지방세 납부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공여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납부대행 수수료를 충당하고 있어서 납세자에게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면제하는 대신에 납부세액을 신용카드사에 일정 기간 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김남국 의원님 안은 영세사업자, 서영교 의원님 안은 저소득자, 최혜영 의원님 안은 모든 납세자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첫째, 카드 납부 시 카드사의 자체 자금 선납부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비용은 국가 또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도 효과적인 세수 확보 및 행정비용 등이 감소한다는 혜택을 본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국가 재정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시 결제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기간 이익을 누린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둘째,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최선의 보전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신용공여 방식은 카드사가 수납한 국고금을 곧바로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요

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국고금을 일정 기간 운용하게끔 하는 것으로, 국가는 국고금 운용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카드사의 비용을 보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공여 시에는 국고 수납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이는 연중 적정한 국고의 수납 흐름을 전제로 예산을 배분하는 자금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용공여 방식 외에도 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국가가 카드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국세를 카드 납부할 때 결국은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부담을 하는데 그 방식이 정부가 직접 할 거냐 아니면 카드사가 조금 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스스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방안인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카드로 납부를 할 때 수수료를 부담 안 하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방식을 쓰든지 이걸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부담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이 현금으로 납부할 거냐 카드로 납부할 거냐에 따른 불편함이나 또는 편리해지는 정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는 것이 저희들 그냥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큰 제약 요인입니다.

지금 현재 카드 납부하는 것만을 가지고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걸 전제하더라도 한 1600억 정도 되고요. 만약 이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한다고 결정이 나는 순간 아마 카드 납부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몇 배가 더 커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왜 지방세는 카드수수료를 카드사에서 이렇게 해 갖고 자금을 활용하게 할 수 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지방세의 경우에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이야기인데요. 과거에는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 금고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통해서만 지방 재정을 모두

예치를 하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은행들 간에 지방 금고 유치 경쟁을 벌였었고, 그 은행들 간에 지방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은행들이, 카드사들이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고객 유치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당시 그런 제도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카드사들도 여전히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유치 목적에서 사실 국세 수수료도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카드사에서 이벤트로 해 가지고 몇 월 달까지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자발적인 이벤트가 아닌 정부가 고정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차관님이 말씀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세하고 지방세를 비교해 가지고 자꾸 ‘왜 지방세는 해 주는데 국세는 안 해 주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저희들도 뼈아픈 지적인데, 과연 그러면 국세를 해 주고 나면 건보료는 안 해 주고, 그러면 4대 보험료는 왜 안 해 주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왜 4대 보험료도 안 해 주고 모든 공과금도 안 해 주고 아무것도 안 해 주는데 왜 지방세는 하고 있냐, 그 지방세가 과연 전체 국민에 세금 부담을 지우면서, 물론 어려운 체납자 도와주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카드수수료를 국가기관이, 공공기관이 대신 납부해 주는 게 그 체계가 맞는 것이냐, 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현재 국세를 징수하게 되면 바로 국고에 들어오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바로 국고에 들어와요?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카드로 하면요?

○소위원장 류성걸 아니, 카드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세금 중에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실장님 말씀이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왜 다르냐’,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이에요. 그런데 ‘지방세는 부담을 안

하는데 왜 국세는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드려야 돼요. 그것은 우리끼리 이야기고 국민 입장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국세든 지방세든 무슨 차이가 있겠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국세, 세금이 금융기관이든지 또는 기업체든지 개인이든지 하여튼 납부가 되면 바로 국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이런 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가상자산 매각을 위한 이전요구 시 체납자에 대한 통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삼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제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 가상자산 매각을 위해서 제삼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전된 가상자산은 이후 직접 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서 체납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61쪽입니다.

개정안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삼자, 즉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체납자에 대한 통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시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니요, 기재부에 지장이 없어서……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62쪽, 예탁유가증권지분 및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신설하고자 하는 정부안입니다.

현재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유가증권이 본래 실물로 유통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것입니다.

63쪽입니다.

하지만 증권예탁제도와 전자증권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됨에 따라서 현재는 유가증권의 실물 유통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점유의 방식을 통한 압류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점유의 방식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에 대해서 예탁결제원·전자등록기관 또는 예탁자·계좌관리기관에 통지함으로써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을 압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64쪽입니다.

중간에,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을 권리자에게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보유·취득하게 하려는 발행인은 권리인으로 하여금 발행인에게 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고객계좌 등을 통지하고 주권 등을 제출하도록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행인이 고객계좌 등 자기계좌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주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식 등의 권리자를 위해서 발행인으로 하여금 명의개서대행기관, 즉 예탁결제원에 권리자의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채납자가 그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에는 전자등록주식을 압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명의개서대행회사 등에 압류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압류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쪽에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포함하는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은 수정안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특별계좌라고 얘기하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계좌 부분은 저희 법에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이 문구에 관련된 사항은 전문위원하고 기재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문구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66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권 심사하실 때 같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나중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70쪽, 공매재산 취득자격이 없는 매수자에 대한 매각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정부안입니다.

71쪽입니다.

현재 다른 법률에 따른 공매재산의 매수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서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자격을 갖추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단 매각결정을 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은 매수자격을 갖춘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금납부 이후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찰일 이후에야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자격 취득 신청 자격을 취득하게 되지만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취득 여부가 결정 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입찰자는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되고 나서야, 즉 개찰일이 되고 나서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최대 14일까지 소요되는 데 반해서 매각결정기일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해지므로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매수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다른 법령에 따른 매수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수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최종적으로 매수자격을 갖추지 못해 매각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공매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2쪽입니다.

첫 번째 매수자 제한 사유에 다른 법령에 따른 매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추가할 필요가 있고, 둘째 매수자격을 갖추는 데 최소한의 시일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매각결정기일을 연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세 번째 공매보증제도는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강제해서 조세채권의 신속하고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자격 취득 여부는 입찰참가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렵고 매각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납부를 강제할 실익이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을 일부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개정안은 적용례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적용례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매각결정기일이 연장될 경우 매수인은 본래의 매각결정기일이 아닌 연장된 매각결정기일까지 매수 자격을 갖추면 되는 것이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개정안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대상을 최고가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차순위 매수신청인 역시 차순위 매수신청을 하는 시점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자격 취득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매수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 이들에 대한 매각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들에 대한 대금납부 역시 강제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도 공매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현재 공매재산 매수가 금지되는 체납자, 세무공무원, 그다음에 매각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이들에 대한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법률에 근거는 없지만 업무처리요령에 따라서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체납자인 경우에는 해당 매각을 무효로 하고 공매보증금을 반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부 내부 지침이 아닌 법에 명시해야 될 내용으로 보이고, 체납자 등은 입찰참가 시점에 매각 결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가한 것으로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를 보완해서 입법하는 방안이 필요하

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좀 실무적인 내용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안의 취지는 위원님이 다 설명을 드렸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세 번째, ‘차순위 매수신청인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 동의합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차순위면 꼭 그다음 게 그대로 낙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차순위는 어떻게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기본적으로 입찰이 끝나고 개봉을 하게 되면 최우선 매수신청인을 정하고, 그중에서 혹시 이 사람이 못 받을 경우를 가정해서 또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정했을 때 이 사람도 만약에 자격을 못 갖췄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을 법률에 의한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이어서 저희들이 반환을 해 주겠다고 기존의 관행을 입법화하는 것이니까 차순위의 경우에는 특별히 반환을 못 하겠다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운영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서 선순위든 차순위든 2명 다 법률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셨지만 현재의 규정이 좀 불명확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과연 반환하는 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나름 또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반환을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인지 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 집행 실태도 따져 보고 해야 돼서 당장 결정하시기보다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다음번에 개정안을 만들 때 그때 같이 판단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2페이지 첫 번째, 적용례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실제 집행하고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게 법률상으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법을 만들 때부터 또 법제처 심사단계에서도 부칙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부칙을 두다 보면 과거 것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실 전문위원 말씀도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안 두는 게 오히려 명확화 차원에서 좀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일을 말한다)’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은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매각결정기일’이라는 단어가 이 조항 말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만 넣으면 그러면 다른 쪽에는 과연 연장된 기일은 빠지는 거냐 그것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일괄적으로 안 넣는 게 현재의 해석과 집행상 문제가 없으니까 정부안으로 그대로 하는 게 저희들은 오히려 더 혼란을 없앨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지금 보증금 반환을 채납자, 세무공무원, 매각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 이 건 돌려주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돌려주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귀책사유로 해서 돌려주지 않는 것보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은데 또 저희들 내부에서도 돌려주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따져 보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얼마를 채납으로 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채납자는 그 재산과 관련된 채납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유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납의 기준이 있어요, 일정 금액 이상?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니요, 그건 금액과 관계없이 매각당하는 그 채납자.

○유동수 위원 그런 게 없으면 이 채납이 본인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금액이 적은 경우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유동수 위원 저도 지난번에 선거 등록하려고

보니까 제 처가 채납한 게 있더라고요. 몇만 원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 채납은 다른 채납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매각당하는 관련된 채납만.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관련한 채납인데 그럴 수 있거든요, 소액인 경우에는.

○전문위원 김경호 그런데 자기가 채납한 다음에 자기 재산이 경매에, 공매까지 넘어갈 만큼 됐는데도 채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납부하면 공매 끝나니까……

○유동수 위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공매로 넘어가는 사유는 채납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법원의 경매일 수도 있고요.

○유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채납 때문에 공매는 되지만 거기에 이르게 된 사정은, 여러 사정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도 모르게 그런 긴박한 상황이 되면, 재산이 막 정리되는 상황이거든.

○소위원장 류성걸 실장님, 제80조(매수인의 제한)에…… 아까 매각결정기일이라고 해 놓은 게 여러 다른 조문에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규정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각기일 내에,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조에 한한다)’ 하든지 그렇게 법기술적으로 좀 규정을 해 주는 게 명확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다른 것은 매각기일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닙니다. 다른 사유로도 다양하게 매각결정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그런 경우가 누차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소위원장 류성걸 어떤 게 그런 게 있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아까 적용례도, 이게 필요 없는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저희들은 없는 게 오히려 혼란을 방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하고, 80조(매수인의 제한)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아까 제일 마지막의 네 번째, 더 고민해서 다음번 개정 때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 더 구체적으로 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이번에는 결심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 상계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김상훈 의원님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경매제도는 상계처리를 인정하고 있어서 매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경매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법상 공매는 이러한 상계제도가 없어서 매수인은 매수대금 전액을 완납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납액과 전세권, 임차권 등 각 채권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분액을 확정 짓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모두 매수대금 상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김상훈 의원님 안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정부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정부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개정안은 매수대금 상계제도를 도입해서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자신이 배분받을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 시 차액

납부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며, 차액납부를 허용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에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되 매수인의 배분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배분기일에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신청인의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공매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78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차액납부가 허용된 매수인의 배분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매수인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배분기일에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각결정을 바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수인의 배분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대금납부기한을 일부 연장하여 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개정안이 채권자인 매수인의 대금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어서 매수인은 본인 배분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를 배분기일 당일에 알게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의가 제기될 상황에 대비해서 매수대금 전액을 배분기일까지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개정안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매수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해서 매각결정 취소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행법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대금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납부를 촉구하고,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각결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이 있는 제삼자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매수인이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공매절차를 새롭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일부 유예기간을 두어서 매수대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배분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정부 취지는 설명이 되었고, 맨 마지막의 매수인의 배분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매수인의 대금납부기한을 일부 연장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연장을 하는 경우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하고 비교해 가지고 지나치게 납부기한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등을 감안해 가지고 사실은 연장은 하지 않는 입장으로 정부안을 제출한 겁니다.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게 진짜 도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은 한번 점검해서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실하고 내용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안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상향입법 및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 제 규정 신설하는 정부안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개정안은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관해서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원의 자격을 법률에 상향입법하고 민간위원에 대해서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 뇌물죄 등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입니다.

81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요건, 위촉 주체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수정의견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취지나 이런 부분은 수용 가능합니다. 수용하는데 다만 그 표현에, 공무원의 경우 법률적으로 ‘지명’이 아니라 ‘임명’으로 많이 쓴다는 점, 그 조문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조문 문구는 조정을 해 주십시오. 문구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징수법 관련 사항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0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9)

(15시49분)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2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83쪽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하는 정부안입니다.

84쪽입니다.

현행법은 주류·밀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 및 법인전환의 신고가 있는 경우 면허 등을 하지 않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하여 면허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면허 신청인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허 신청인이 주류면허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서 위 1·2번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등 열세 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의 사유에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위 1·2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면허 등을 제한하고 면허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특수관계인이 면허 취소된 영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자와 법인의 신설·전환을 통한 면허 재취득의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86쪽입니다.

다만 현행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임

원에 대표자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등을 참고할 때 임원에 대표자가 포함되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없겠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과 관련한 부칙의 경과조치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전문위원 검토의견 맨 마지막 부분, 임원에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법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이라고 그러냐, 그 세법의 적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상 대표자까지 포함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대표자’라고 넣으려고 한 건데, 전문위원님 취지를 감안할 때 저희들은 그냥 ‘법인세법상 임원’ 이렇게 하면, 법인세법에는 사실상 임원에 대표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하면 저희 취지나 전문위원님 취지나 다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정하고.

그리고 경과조치, 부칙을 삭제하자는 부분은 저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법인세법상 임원’ 이런 규정이 있나요? ‘법인세법 제 몇 조의’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조문을 정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식품접객업 영업장소 내 주류 소분판매 등 허용을 명확화하는 정부안입니다.

현행법은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사유를 열한 가지 규정하고 있는데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도 그 사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개정안은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더라도 식품접객업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기존 허가받은 주류와 다른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이므로 본질적인 주류 변경이 아닌 단순 가공·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서 담아 판매하면 이것은 다 취소하게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아니요, 주세법은 기본통칙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면 그걸 그냥 법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허용하고 있고 그것을 법으로 올리는데 다만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키트를 통해서, 그냥 일반 소매점에서 술병을 따서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키트에서, 우리가 커피를 따라 먹듯이 술이 무언가 기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사실상 일반 소매점에서는 이게 1ℓ 짜리건 10ℓ 짜리건 그냥 통째로 사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어쨌든 용액이 흘러나오는 행위를 하는 순간 그건 음식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소매점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법에다가, 현재 그렇게 집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법에다 명확하게 하는 차원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사안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하는 정부안입니다.

현행법은 주류 제조면허 취소 사유 18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주세를 포탈한 경우도 그 사유의 하나로서 각 주류에 대한 주세포탈 최저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탁주는 50만원 이상, 탁주·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는 200만 원 이상, 주정 및 증류주류는 500만 원 이상,

맥주는 1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는 주류별 주세포탈 최저한도액을 현행의 2배로 상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감사원의 주세포탈 주류면허 취소 기준금액 정비 필요라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99년에 개정된 주세법에 현행과 같은 기준금액이 정해진 이후에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므로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류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 규모임을 감안해서 제재 규정 완화가 필요해 보이며, 2000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2배 상향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포탈 최저한도액을 주류별로 차등하게 규정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일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업종 규모 등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주류별로 포탈 최저한도액을 달리 규정해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가 없겠습니다.

둘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법 제7조(면허등의 제한)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포탈 최저한도액 역시 상향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 원 이상 포탈해서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 등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전문위원 지적 사항이랄까요, 검토의견 첫 번째 부분 관련해서는, 포탈 최저한도액을 주류별로 차등화할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류별로 아무래도 시설 규모나 주세율이나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등해서 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세·지방세 포탈 최저한도액도 역시 같이 상향 조정해야 된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도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맥주량 증류주에 느슨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주종별 위반액이랑 위반율 이런 것처럼 실제로 그 억제력에 관련된 통계를 좀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저희들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감사를 하면서 관련 규정이 20년간 똑같이 유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최소한으로 2배로만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한 준비 차원입니다. 그렇다고 제도를 없앨 수도 없고 적용이 안 됐으니까, 그냥 유명무실하니까 금액을 놔두겠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깐요 적절한 수준에서 현실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탁주의 경우 기존에 50만 원 이상 또 개정안의 경우에 100만 원 이상, 이 정도를 가지고도 면허를 취소할 수, 이것만 넘어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평가하고요.

또 이걸 다른 문제지만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 게,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아야 이게 개선이 되는 사항인지,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훨씬 더 현실하고 밀착돼 있고 감사원은 그냥 감사원에 있다가 와서 감사하는 거지 현실 속에 있는 기관이 아닌데, 그런데 좀 체계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마 국세청도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를 만났으면,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취소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100만 원 가지고 취소해야 되느냐, 이것 제도가 너무 잘못됐다는 걸 느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걸 만나 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이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고요.

○조해진 위원 감사원이 이런 것까지 감사해 가지고 제도개선하라고 지시하고 이런 체계가 맞나 싶어 가지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꼭 이 부분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규제 정비 이런 차원에서 한 번씩 총리실이나 감사원에서 관련 제도들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그냥 물가

감안해서 하는 걸 텐데, 그런데 저는 전문위원 지적 사항이 맞다고 봐요. 탁주가 100만 원이고 맥주가 2000만 원이어야 된다는, 그건 설득력 있는 기준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화시키는 것도, 어차피 이런 사례가 없는데 이걸 이렇게 나누느니 좀 단순하게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한번 국세청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이제까지 적발된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국세청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하는 정부안입니다.

현행법은 22년 1월 6일 개정으로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의 금품 제공 등의 금지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중전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상향입법으로 해당 고시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 사항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은 허용되는 금품 제공 등의 예외적인 경우만 열거한 후 기타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 금지나 그 밖에 금지하는 행위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신설된 금지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실효성 제고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30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6)

(16시01분)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3항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시 형법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홍영표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잔액 5억 원 이상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위반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대신에 처벌된 경우에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위반금액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일단 부과하고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해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개정안은 해외계좌 신고의무자로서 미신고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경합범에 대해서 수 개의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서 정한 형의 금액의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해서 정한 형의 금액을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한 형의 금액의 2분의 1을 가중한 형량과 각 죄에서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형량 중에서 가벼운 쪽을 상한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간의 금전제재의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40억 원인 자가 5년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2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반해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60억 원인 자가 5년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받는 벌금형은 최대 18억 원입니다.

그 이유는 1년간 12억 원인데 그 12억 원을 5년 곱하는 게 아니라 제한가중 때문에 12억 원의

1.5배, 즉 18억까지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97쪽입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과태료 납부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60억 원인 자가 5년간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는 총 42억 5000만 원이지만 벌금형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최대 18억 원 수준입니다.

다만 벌금형은 언제든 노역장 유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본래 자유형을 대체하는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기본법은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가 이하인 경우에 비해서 제재가 약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

둘째,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다른 해외자산의 경우에 비해서 중한 편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자가 관련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등의 1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별도의 행정형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98쪽 셋째, 현재 조세포탈이나 면세유 부정유통,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 등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다른 위반행위들과 비교할 때 과세 당국의 역외세원 파악 용이성을 위해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협력의무인 해외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제한가중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함으로써 형량을 더욱 가중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지금 과태료보다도 현행 규정상의 벌금형이, 96페이지의 예를 보면 잔액이 60억 원인 자가 5년간 신고를 하지 않

은 경우는 과태료는 25억 원이고 60억 원인 자가 5년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벌금형은 최대 18억 원이 되니까 금액만으로 보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만 금액 수준만 가지고, 하나는 과태료고 하나는 형벌인데 그것을 꼭 가중을 시켜 가지고 금액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나 하는 데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다만’으로 해서 쪽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과태료하고 벌금 사이에서 그런 차이가 있고, 지금 정부 입장은 그냥 놔두자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현행으로…… 너무 과잉 제재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홍영표 위원 그런데 저는 하다 보니까 외국의 부동산 취득·보유 이 문제는 오히려, 이것은 좀 강화해야 되지 않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오히려 부동산을요?

○홍영표 위원 예, 이것은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해서, 외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액이 굉장히 높을 텐데, 하여튼 이것은 다음에 하더라도……

그래도 하여튼 뭔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내긴 했는데, 이게 대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50억 이상 했을 때 벌금 했을 경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무래도 징역까지 가지는, 판결이 나온 케이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징역 가는 형까지는, 지금 그게 규정 자체가 없잖아요.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게 대개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과태료하고 벌금…… 돈으로 보면 벌금을 택하지요, 벌금은 18억밖에 안 내도 되니까. 부자들은 그러지 않을까, 돈을 놓고 선택하면.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부자들은 오히려 금액만 가지고 보겠습니까? 또 사실은 형벌이라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벌금이 금액으로 부과되더라도, 그게 전과인데요.

○**홍영표 위원** 감옥 안 가면 비슷할 것 같은데, 돈 쪽을 택하면 그냥 과태료 안 내고 이쪽으로 선택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들도 100% 이해는 하는데 전문위원도 적었지만 기본적으로 과태료 자체가 너무 세고 또 어쨌든 이게 그 자체가 곧 탈세는 아니고 뭔가 탈세를 전제로 한 협력의무다 보니까 협력은 나름 협력의무에 맞는 또 법체계를 갖추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또 뭔가 탈세의 전제가 되다 보니까 과태료는 아주 세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2개가 충돌해 가지고 오히려 차라리 벌금 내는 게 낫다 이런 결과까지 가 버린 건데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사항 아닌 것 같습니다.

○**홍영표 위원** 저는 앞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조세회피 수단이나 또 여러 가지 범죄나 이런 쪽으로 활용되는 게 더 늘어날 걸로 보여요, 우리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이러면.

저는 지금 현재 이게 과다하다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고하지 않고 이러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것을 과태료…… 이게 더 과잉 입법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하기가 힘든데 아무튼 좀 더 검토를 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한번 좀 짚어 보겠습니다. 다른 쪽하고 균형도 한번 보고요, 보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한편으로는 홍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위낙 이제 글로벌한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은닉의 가능성이 커지는 면도 하나 있는 반면에 또 그런 거에 따른 OECD 중심의, 세원 포착을 위해서 지금 CRS라고 전 세계 각국이 각국 금융기관에 외국인 계좌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매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웬만한 국가에 금융계좌를 개설해서 유지를 하기에는 거의 100%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요.

최근 논의 과정은 그걸 또 가상자산으로 바뀌어서 은닉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상호 간에 통보를 하자,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까지 지금 상당히 진

척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영표 위원** 가상화폐는 해외에 그렇게 계좌를 열어서 뭔가 은닉하는 수단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100% 포착이 됩니까? 아까 말한 OECD에서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되나요, 그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세상에 100%라는 게 있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가상자산을 혼자서 지갑이전 방식으로 누군가의 거래 상대방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또 뭔가 제3의 계좌로 현금을 받고 그 가상자산을 지갑이전 방식으로 쏘면 못 잡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당한 규모의 예금 또 가상자산을 가지고서 그걸 현금화하려면 결국은 어딘가의 거래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거래소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거는, 각국의 거래소는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통보한다라는 논의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금융자산 통보, 부동산 통보 또 가상자산 통보를 피해서 피해서 다니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홍영표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진선미 위원** 여기에 해당이 돼서 벌금이 실제로 부과된 사례가 한 해에 몇 건이나 되는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건 한번 국제청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미 위원** 없어요?

○**전문위원 김경호** 최근에도 아마 그런 사건이 있었나 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판을, 쟁송 과정에서 항소를 하면, 이기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되니까 항소를 포기하고 그냥 과태료를 받은 그런 경우도 있는……

○**진선미 위원** 반대로.

○**전문위원 김경호** 아니, 반대로.

○**홍영표 위원** 과태료 하기 싫으니까.

○**진선미 위원** 벌금을 냈다고요?

○**전문위원 김경호** 예, 자기가 일부러 저서 벌금을 내고……

○**소위원장 류성걸** 자, 그 관련되는 사항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6권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중 일몰 기한 연장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 소위 자료 5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권 관련되어서는 이미 상정을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총괄표가 있으니까 관련되는 사항을 총괄표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일몰 관련되어서는 정부안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물론 의원님들 대표발의한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본적인 기준 설명해 주시고 또 그 기준에 달리 적용했던 예가 몇 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목차 다음번에 나오는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앞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조특법에서 일몰 부분이,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심사를 하였고 지금 여기에 정리한 부분들은 제도개선이나 변경 내용은 전혀 없고 일몰 기간만 연장하는 의원발의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총 아이탬은 38번까지 있습니다.

다만 연번 3번에 보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특례, 즉 나머지 대부분의 정부안들은 3년 연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특례는 정부안 5년 연장하고 있고, 4번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특례 이 부분은 1년만 연장하고 있습니다.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일단 쪽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토론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이것을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하면 1건을 하더라도 지난번 1권부터 4권까지 그리고 6권과 같은 시간과 또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용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이것은 순전히 일몰 연장에 대한 사항만 전부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 일몰을 어떻게 했느냐고 행정부에 질의한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3년을 기준으로 했고, 3년을 기준 했던 것 이외에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하고 그 관련되는 사항은 왜 3년이 아니고 1년 이든지 2년이든지 5년이든지 이렇게 했는가를 설명 듣고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시는 이런 순서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혜영 위원 그러니까 쪽 듣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 번에 토론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위원장 류성걸 지금 시간은 제가 대충 생각을 해 보니까 5시 반 전까지는 일독을, 일몰에 관련되는 사항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개별 사항 1건씩 들어가게 되면 내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1건 이야기하고, 지금 표시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번의 경우에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특례가 3년이 아니고 왜 5년이었는지, 그 밑에 주요 내용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쪽 하고 난 뒤에……

○유동수 위원 지금 하시는 방법으로 하고 질문을 마음껏 받으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쪽 해서 하고, 일단 3년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냥 지나가고 3년이 아닌 경우를 먼저 설명을 하고 전체 의견을 말씀하시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저는 사실 일몰이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용을 거의 보지 않는 방식으로 심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견이 좀 있는데요.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 잠깐만요.

내용을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용은 전부 다 요약 정리되어 있고 주요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기본적으로 3년을 했다고 하니까 3년 이외의 것에 대해서 왜 3년을 안 하고 1년이나 2년이나 5년 그렇게 했는지를 답변을 듣고 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장혜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다못해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하고 그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이제는 일몰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었던 사안들도 여기는 그냥 단순 연장하게 되어 있는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전체 쪽 설명을 하고 장혜영 위원님께서 심층 평가했던 결과 중에서, 심층평가했다니만 일몰 연장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일몰 종료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다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물으면 정부가 답변하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그러면 쪽 듣고 의견을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그렇게 합시다.

○장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4번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는 정부는 1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번 5번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 공제의 경우에 정부가 1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번 10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에 정부는 2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연번 16번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청약저축 과세 특례에서 정부는 2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연번 18번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례에 대해서 정부는 1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연번 27번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서 정부는 2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부안이 모두 다 3년을 연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항목 위주로 하되 왜 3년을 기본으로 했는지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기했던 항을 왜 3년이 아닌 다른 기간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단순 일몰 연장의 기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조특법에서 특별하게 내용을 개정할 만한 이유가 없을 때, 그냥 축소도 아니고 확대도 아닌 단순 일몰 연장의 경우에는 통상

적으로 3년을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차관도 말씀드렸지만 3년을 한 이유는 보통의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그다음 첫 번째 해에 기업이 운영되고 그것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다음 해, 2년 차 3월 달에 법인세 신고가 들어오고 그 법인세 신고가 분석이 되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게 2년 차 하반기, 후반기쯤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몰 2년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2년 차 8월 달까지 저희들이 국회에 법을 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신고 실적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도의 연장에 따른 효과 분석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걸 일반적으로 3년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중간에 일몰을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한 3, 4년 전에 2년씩으로 운영해 본 적도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운영상의 한계 때문에 작년부터는 다시 3년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각각 3년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3번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특례의 경우에는, 이 외국인기술자 50% 감면하고 며칠 전에 심사하셨던 외국인기술자 단일세율 이 두 가지 부분은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외국인근로자, 특히 우수한 근로자·기술자들의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외국인 우수인력의 유치 안정, 그분들의 예측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번 정부안에서 유일하게 5년 연장하는 안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번 에너지절약시설 가속상각의 경우에는, 이 가속상각이라는 제도가 일반적인 세제지원이 아닌 굉장히 예외적인 세제지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부분이건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의 가속상각에 있어서는 1년씩 연장을 해 왔던 게 조세정책 운영의 기본 틀이었습니다. 그 틀에 맞추어서 이번에는 절약시설에 대한 특례도 1년만 연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5번의 경우에는 23년 6월 30일까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24년 말까지 고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매년 저희들이 연장을 하면서 1년씩만 연장을 해 왔습니다. 이유는 이게 길게 기간을 주다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유인을 하겠다는 그 유인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1년간만 유예를 줘서 1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라, 이 제도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정규직 전환을 좀 더 빨리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연장할 때는 1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번도 실질적으로 3년을 연장한 거고, 기존에 있던 제도를 다시 3년을 연장한 거니까 7번은 당연히 3년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0번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2년을 연장을 했는데 각종 특구나 지역개발과 관련된 세제지원이 23년 올해 일몰하는 경우가 있고 또 25년에 일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법안을 가져오면서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감면제도는 일단 25년으로 모든 걸 다 맞춰서 25년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각종 특구나 지역개발에 대한 감면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다 25년으로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16번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주택종합청약저축이라는 게 일반형이 있고 청년우대형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별도로…… 당초에는 일반형만 있다가 청년우대형이 중간에 들어오면서 일몰이 2개가 달랐는데 어쨌든 큰 청약저축이라는 제도 내에서 하나의 특별한 부분이다 보니까 같은 일몰로 맞추어서 동시에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일반청약저축이 25년이 일몰이어서 이것도 25년으로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7번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조해진 위원 18번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18번은 23년 말까지 폐업 및 26년 말까지 사업개시니까 기본적으로는 3년을 연장한 겁니다. 3년을 연장했는데 단지 사업개시 기준은 26년 말, 지금은 23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일몰시키면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다만 23년이라는 단서를 건 것은 최근에 폐업한 사람에 대한 지원제도가 아니고 이것은 이미 3년 전에 폐업해 가지고 그 사업이 아주 오래전에 정리가 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때문에 기존 제도 자체가 20년 말까지 폐업, 23년 말까지 사업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준을, 폐업과 사업개시의 기준을 동시에 3년간 연장을 하다 보니까 23과 26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업개시가 일몰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3년간 연장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27번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여기에 유사한 제도가 일종의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다 보니까 이게 재활용폐자원이 있고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있습니다. 중고차의 경우 지금 25년으로 일몰이 돼 있는데 유사한 제도는 같은 시기에 일몰을 종료를 시켜서 동시에 평가도 하고 개선점을 찾는 게 필요하겠다는 싶어서 이것도 기한을 맞추는 차원에서 25년으로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그러면 지금부터는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 장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는 심층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층평가 관련된 사항 포함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님, 좀 이따가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심층평가하고 이와 관련되는 자료도,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에 8권 하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할 겁니다. 그때 함께 봐야 될 자료가, 심층평가라든지 일몰에 관련되는 자료를 전부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장혜영 위원 우선요 국회예정처 자료를 보면 이번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지출 신설이 4건, 확대가 19건 그리고 단순일몰연장이 60건, 폐지 6건, 축소 3건으로 전체 92건 중에서 83건, 90%가 확대·연장·유지입니다. 그 결과가 내년도 국세감면율 16.3% 법정 한도를 9조 원이나 훌쩍 넘긴 실정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지난 정부보다 이번 정부가 단순일몰연장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53%인데요 올해는 82%로 30%나 늘었어요.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국세감면율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거듭 지적을 하신 바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조세지출 성과평가 내라 하고 정책목적을 달성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 감면은 종료 또는 재설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밝히신 것과 지금 올라와 있는 세법 개정안의 일몰연장 법안들 사이에 불일치가 되게 심각합니다.

일단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 권고 사항이 지속적으로 무시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올해 일몰건 중에서 13건의 심층평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2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건이랑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이 2건은 제도 개선 및 장기적으로 일몰종료가 제안이 됐는데 정부 결정은 그냥 단순일몰연장입니다.

국세수입은 7%가 감소하는데 조세지출은 12%를 늘리는 안을 정부가 내밀고 있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 정부의 건축 기초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상충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출되어 있는 일몰법안들 가운데서는 많은 부분이, 특히나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법정 국세감면율이라든지 아니면 국세수입과 국세지출의 비율을 맞추든지 이런 종류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 조세특례 심층평가 중심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두 가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25번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등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건인데요.

저는 매년 1조씩 이렇게 유류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정책이 더 이상 농·임·어업 지원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도 농업 부문의 감축이 2030년까지 27%를 줄여야 됩니다. 농업 부문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줄어들고 있지는 않아서 되게 도전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농어촌에서 경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화석연료 가격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것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에 대한 유인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사실 이번 정부에서 투자도 많이 줄이기 때문에 되게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보면요 이게 농·임·어가 소득 향상에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농·임·어업인들에 대한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게 분석이고 이 혜택이 없어진다고 해도 농·임·어업인들의 소득이 낮아진다는 증거를 찾지도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유류세 감면은 그만하고 다른 종류의 농·임·어업 소득 지원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기후 대응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 화석연료 보조금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납부 관련해서도요 검토보고에서도 나오듯이 사업자의 부가세를 축소한다고 해서 실제 운수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편의나 수당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인하분을 가져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세특례 심층평가도 제도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차라리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개편하는 게 시급해 보이고 저는 이 일몰은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반대하는 안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3번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연장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데요.

일단 이런 특례가 있는 국가 자체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특례가 있는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이런 국가들 다 한국보다 되게 높은 소득세를 내는 국가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국가들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만으로 이걸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국인하고 실효세율 차이도 최대 2%나 되기 때문에 50%까지 감면할 이유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번 지주회사 설립·전환 현물출자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처럼 대규모의 세제혜택 특례를 축소할 필요가 있어서 법을 개정했고 이런 급격한 조세 부담을 막기 위해서 2년 연장을 했는데 여기 또 추가로 2년 연장하고 또 3년을 연장하면 사실상 이것은 연속적인, 영속적인 특례 보장이다, 기업들은 이렇게 이해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세이연 혜택이나 이런 다양한 다른 혜택들도 법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것은 최소한 일몰을 고려를 해야 되고 연장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기간을 1년으로 줄이든지 하는 방식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번 재활용폐자원 관련된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이것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정책 방향성 자체가, 심층평가 결과를 보면요 이 해당 제도 공제율 증가에 따라서 폐자원의 양 자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폐자원 자체를 거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순환을 통해서 폐자원의 유통 자체를 축소시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는 정책의 방향이고 이것은 현 정부에서 밝히신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폐자원 거래량 자체가 활성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순환이 늘어나야 된다는 건데 지금은 자원순환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폐자원 거래만 늘어나고 있는 걸 강화시키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반대하는 법안들은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연변은 25번인데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일몰연장 법안을 내셨고 저는 일몰폐지 법안을 냈습니다.

사실 농어촌·산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 살 여건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정주여건이 좋은 대도시나 수도권 쪽으로 옮겨 가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옮겨 가고 또 바깥에서 들어오지는 않고 그리고 출생, 출산율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역대 정권, 정부의 많은 지원책들이 있었고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추세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중단되거나 아니면 역전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농촌·어촌·산촌에 남아 있는 분들은 정주여건은 아주 나쁜데, 교육·의료·복지·문화·예술 이런 정주여건은 안 좋은데 그나마 남아 있을 수 있는 근거 중의 하나가 생업 기반입니다. 그래도 농사를 아직은 지을 수 있다 또 어로를 아직은 할 수 있다 또 아직은 임업을 할 수 있다, 그것 가지고 기본 생활은 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나마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농업만 하더라도, 우리 기재위에서도 늘 거론이 되었지만 농산물 가격을 제값을 받거나 아니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서 생활 기반이 안정되는 일이 지금 늘 불안정한 상황이고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비자물가 유지·관리 이것 때문에 농산물이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하는데, 그런 속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하면서 농사를 계속 짓는 사람, 농민들이 이게 지속가능하냐, 언제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의 손익분기점에서 늘 고민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인건비 부담, 두 번째 비료나 농약 같은 이런 재료비 부담, 그다음에 순서는 1·2·3순위는 아니지만 연료비 부담이 제일 큰 부담입니다, 현장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그래서 그 세 가지 농업 원료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각도에서 그나마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익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비료값도 다 내야 되고 농약값도 다 내야 되고, 인건비는 지원이 없습니다마는 연료비도 다 내야 되면 아무도 농사지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버티게 해주는 게 이런 지원 때문입니다. 지원이 그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연료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워낙 상승해서 난방재료를 석유류에서 전기로 바뀌 가는 추세인데, 그래서 전기료에 대한 감면에 농민들의 요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연료비에 대한 감면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석유류에서 전기로 에너지원을 옮겨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법안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마저 끊어 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정부가 관리 안 하고 그냥 놔두면 한때 대박 칠 때는 돈 좀 벌고 쪽박 찰 때는 또 그것 가지고 상계해서 살 수 있지만 떨어지는 것은 정부가 안 받쳐 주지만 올라가면 정부가 누르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그 농사를 지음으로써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연장이 되어 왔고 농업 같은 경우에는 근 40년 가가

이 연장되어 왔습니다, 어업은 한 50년 가까이 연장되어 왔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연장하는 게 아니라, 일몰 아니라 폐지하고 감면을 영구히 하는 게, 나중에 없애야 될 상황 되면 없애더라도. 그래서 저는 폐지법안을 냈는데 이것은 감면을 더 연장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그것은 불가피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그나마 가속을, 속도를 늦추고 있는 지방소멸 급속하게 진행돼 버린다,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이것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길어서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잠깐만, 위원님들 말씀 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호 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몰을 1년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정태호 위원 그런데 그 1년으로 하는 이유가 정규직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나라는 말씀인데 오히려 그게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일종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예요. 그러니까 한 기업 안에서의 대화도 있지만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이 대화 과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면 요새는 기업 안에서 노조도 복수노조잖아요. 노조 안에서도 제1노조를 둘러싼 갈등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규직화되는 사람들도 어느 노조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되게 복잡한 이슈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1년 만에 해결하라고 하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대화를 좀 더 숙성시켜 가지고 정규직화하는 절차들을 잘 밟아 나가는 게 도움이 되는 건데 1년 안에 하려고 그러면 막 가다 보면 장애물들이 툭툭 튀어나와 가지고 오히려 그게 갈등의 불씨가 되고 해서 제대로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판단이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3년을 기준으로 하신다니깐 오히려 3년을 주고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게 제가 보기에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예요.

○소위원장 류성걸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지금 반대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된 법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고용진 위원 저는 7번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및 유예기간 연장하는 것, 아까 장혜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부 측 답변 혹시 하셨습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아직 안 했습니다.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여러 가지, 그렇게 법이 새로 2019년에 개정된 배경도 아실 테고 그 뒤에 지금 계속 유예를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게 2021년에 2년 유예, 2023년에 3년 유예, 그 전 개정 직후에 또 2년 유예해서 지금 7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는 제도를 바꾸는 때였으니까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는 흔히 있는 거고 또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2021년에 생겼기 때문에 3년 유예기간 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법의 시행을 앞두고 7년이나 유예한 경우도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본 적도 거의 없고 그렇게 되면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이런 부분은 현저하게 훼손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법 시행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것 도대체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3년 유예 이후에는 시행한다고 차관님 또 기재부에서 장담하십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또 다른 위원님들.

일단 여기까지 차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변호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제가 장혜영 위원님 주신 비과세, 그러니까 특례 연장을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또 실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과세 감면은 줄여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일몰이 돌아오면 효과가 달성된 부분은 중단을 하고 가는 또는 제도를 좀 바꿔서 점차점차 줄여 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다른 때에 비해서 건수나 비율이

좀 많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져 보면 이유들은 다 있는 거고, 지금 농민이나 어민들에 대해서 면세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혜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데 비중을 두는 이유와 조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견해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하나씩 이유는 다 있고, 일몰해야 될 이유도 있고 연장해야 될 이유도 있고 한데 정부로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이 혜택을 받고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다만 몇 년이라도 조금 더 해 주는 쪽으로 안을, 방향을 잡고 왔다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번호 순서대로 정부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기술자 부분인데 지난번 단일세율 부분도 그렇고 기술자 50% 감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걱정들과 과세 형평성, 실효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사업자들 단체, 예를 들면 암참이나 유럽상공회의소, 일본상공회의소 또 저희들 일반적인 중소기업·중견·대기업들 또 부처들 그런 데서는 어쨌든 과연 이게 없다고 외국인이 안 오겠느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이 정도 고액 연봉자거나 아주 우수한 인력이 되면 결국은 최종적인 세후소득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인력 유치의 어떤 기본 틀일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외국의 우수한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내국인과의 과세 형평 또 여러 가지 실효성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제도에 대한 확대 요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더 확대까지는 하기

힘들더라도 이 제도가 일시에 없어짐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담이 생기고 실효성이 저하되는 부분에서 제도의 유지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5번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태호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큰 틀의,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큰 폭의 비정규직 그룹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노사 간의 협의 또 노노사에 의해서의 어떤 의견 조율 또 사회적 갈등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그런 장기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제도를 최근 한 10년간 실질적으로 매년 연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제도의 개정 취지는 새롭게 정규직으로 뽑을 것이냐 비정규직으로 뽑을 거냐, 어떤 특정한 큰 집단이 아닌 개별 한 명 한 명의 고용을, 채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을 길게 주면 어쨌든 이 사람을 뽑아 가지고 일단은 여러 가지로 장점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한 3년 있다가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비정규직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다 누리고 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제지원도 누리고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어쨌든 이 제도의 취지에 안 맞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1년을 계속 유지해 왔던 부분이고요.

포커스를 이 제도의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저희들 제도의 취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7번의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아까 고용진 위원님이 시행을 앞두고 7년이나 유예하는 사례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단순한 연장이 아니고 19년에 개정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한 2년에서 길면 5년 그 정도 하고 제도를 시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큰 틀에서 저희 100%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대원칙일 거라 생각하고.

사례는 좀 안 맞기는 한데, 경우는 다르기는 한데 유사한 사례는 예를 들면 지난번 논의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출자금·예탁금에 대해서 확대를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으셨는데 출자금·예탁

금의 경우에도 지금 제도를 보시면 23년에 일몰을 하고 24년부터는 5% 저율과세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5% 저율과세로 바꾸겠다는 것을 한 10년 이상 전에 정부안으로 만들었고 국회에서 의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계속 그냥 단순 연장이 아닌 매년 바꿀 때마다 '그러면 3년은 있다가 5%로 바꾸자. 비과세를 그만하자. 이것은 특별한 몇몇 금융기관들에 대한 우대다'라는 차원에서 비과세를 중단하는 게 맞다라는 대원칙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아직은 그럴 때가 멀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경우는 다를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제도의 방향을 정하는 것하고 또 그 상황에서 이 제도를 바로 시행할 건지 한 5년 있다가 시행할 건지 한번 더 연장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현시점에서도 지주회사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이 많은 부분은 이게 합병이나 분할이나 기업 교환이나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실현되지 않은 부분인데, 단순히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어떤 자회사나 보통의 회사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바뀐 건데 거기에서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주식 양도차익을 비록 4년 거치 3년 분할 입금은 하지만 그렇게 과세를 해가지고 과연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세부담을…… 지주회사로 전환할 의지나 상황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배려는 더 이상 해 줄 수가 없다, 과세 형평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여전히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확실한, 제대로 부담을 덜어 주는 그런 지원이 아직은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3년을 더 연장한 것이고요.

과연 의지가 있느냐, 앞으로 3년 뒤에는 과연 꼭 시행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시점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5번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장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가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것은 탄소중립 등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다른 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 제도를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다만 아까 또 조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냥 단순히 이것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가장 많은 의원님들이 의원 입법안까지 내신 그런 법률안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좀 더 깊게 고민하고…… 정말 시스템이 잘 돌아갔으면 이것을 폐지하면서도 조해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소멸, 농어민의 부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대안들을 가져오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연장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기도 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현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강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장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층평가 결과도 '바로 폐지해라. 문제없다. 효과도 없고 폐지해도 문제없다'까지는 아니고 다른 지원책을 찾는 게 필요하고 전체적인 제도를 재설계하고 간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심층평가 결과를 제대로 이행을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그런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는 하고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일반택시 부가가치세도 농업용 석유류하고 마찬가지로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택시 부가세를 경감하는 부분을 90%를 근로자 복지 증진에 쓰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아마 실질적으로 장부상으로는 90%가 근로자들에겐 돌아갔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데 그게 장부상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택시 종사자들의 복지가 과연 크게 증가됐다고,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비판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임금체계와 복지체계가, 돈이라는 게 꼬리표가 없는 거다 보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을 차라리 폐지하고 택시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복지, 처우 개선이나 또 요금제도의 개선 또 감차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고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인정하는데 농업용 석유류와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 일거에 폐지하고 다른 제도가 보완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싶고요.

제활용폐자원에 대해서도, 거래만 증가하고 순환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 분명히 경청하고 깊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01년에 10%였던 공제율을 14년에 3%까지 축소한 상황이고요. 14년 이후에는 더 이상 공제율은 축소하지 못하고 단순히 일몰 연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현시점에서의 현실적인 고민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일몰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자,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관련된 사항을 반영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몰 관련된 자료를, 총괄표를 조금 전에 장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금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일몰 되는 게 전체가…… 지난 번에도 표가 어디에 있던 것 같던데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그것 중에 연장이 됐는데 일몰이 된 경우도 있고 3년 된 경우도 있고 2년 또는 1년, 5년 이렇게 된 게 있을 겁니다. 총괄표를 만들어 주시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심층평가를 계속 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 했던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치 심층평가 결과를 요약 정리를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면……

또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그 심층평가 결과가 일몰 연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일몰 관련……

○장혜영 위원 자료를……

○소위원장 류성걸 예, 자료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11번 자경농지 관련된 것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세수 감소는 1조 3000억 원으로 되게 큰데 다수 연구는 효과성이 없어서 폐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자경자한테 실제로 혜택이 있는 건가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농지의 40% 이상이 외지인 소유고 국회의원들 내지는 청문회 단골 소재로도 맨날 가짜 자경증명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번의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관련기한 연장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대상 업장은 5만 곳인데 실적은 13개밖에 없어서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부족한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21번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 할 때 부가세 영세율 적용하는 것이, 면세 규모가 5년간 1조 원이니가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 심층평가 같은 자료가 없어요.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부가세 면제가 정확하게 어디서 귀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자료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영세율은 제가 작년에, 이것 약간 뒤끝인데 생리용품 가격을 낮추고 안정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영세율 적용을 해야 된다는 법안을 냈다가 정부 측의 강렬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생리대는 안 해 주면서 왜 사회기반시설은 되는 것인가 이 영세율 문제, 이게 일관성이 있는 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답변하실 사항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짧게만 답변을 드리면, 11번 자경농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년 자경농지 이것 지금 연장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경영이양 직불보조금과 관련된 거고 아마 감면 규모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일반적인 8년 자경농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8년 자경농지는, 이런 표현을 드려도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한도를 정해서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다양한 논쟁과 방식이 다르게 있는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는 당연히 거주이전의 자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은 너무나 거의 기본권에 가까운 굉장히 일반적인, 아주 법적으로 정착이 된, 뭔가 이것을 축소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8년 자경농지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농업이라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면세유 이런 석유류 같은, 그것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혜택인 것은 맞습니

다. 그런 농업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몇 개가 있듯이 일반적인 부동산이 아닌 농업에 8년 이상 종사하신 분이 그것을 또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업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받지 않는다는 제도가 수십 년간 유지가 되다 보니까 어떤 큰 틀에서는 거의 1세대 1주택처럼 양도세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그 정도의 제도로 저희들은 사실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 몇몇 분들이 거기에 과연 자경을 하고 있느냐, 제대로 자경하는 것을 속이지 않느냐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탈루가 있거나 투기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제 집행 과정에서도 심지어는 국세청이 위성사진을 찍어 가지고 거기는 농지로 사용된 적이 없다, 이렇게 풀이 많은데 이게 무슨 농지냐 그런 증거자료까지 제시하면서 다툼을 벌이고 있고 또 저희들 제도개선상으로도 근처에 살아야만 해 준다,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농장 하겠다……

○소위원장 류성걸 실장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까지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생리대만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님, 생리대 부분은 하나의 차이는 딱 그겁니다. 생리대는 최종소비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혜택이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줄여 주는 것은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적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영세율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강한, 저희들만의 고집일 수는 있는데 세제 운영의 틀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간접자본의 경우에는 최종소비재가 아닌 중간에 B2B 간의 거래입니다. B2B 간의 거래기 때문에 이것을 영세율을 안 하고 일반적인 과세로 하더라도 그것에 따른 추가적인 세수증이나 세수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SOC라는 큰 틀의 사업을 하는 와중에 부가세가 붙어서 돈이 돌아다니다 보면 일시적으로 받는 사람, 주는 사람 간에 자금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SOC, 특히 국가에 공급하는 SOC에 한해서 그中间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자는 취지지 특별

히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누군가한테 세금 감면이 귀속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오늘 조특법 관련 일몰 연장 관련해서 자료, 관련된 사항이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처음 회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일몰 관련된 사항이 다음 8권 이후에 추가적으로 논의될 수 있으면 논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혜영 위원님께서 오늘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7권과 8권을 심사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장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0건에 대해, 오늘 1건은 논의가 됐습시다라는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 준 현	고 용 진	류 성 걸	배 준 영
양 경 숙	유 동 수	정 태 호	조 해 진
주 호 영	장 혜 영	진 선 미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 경 호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김 병 환
세 제 실 장	정 정 훈
조세총괄정책관	박 금 철
소득법인세정책관	조 만 희
재산소비세정책관	이 용 주
국제조세정책관	정 병 식
관 세 정 책 관	이 형 철
국세청납세자보호관	변 혜 정